

시사자료·제61호

통 일 교 육

통 일 연 수 원

북한동향

■ **대내동향**

- 김일성, 김정일 생일행사 동향 7
-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 개최 23
-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 개최 29
- 「사로청」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34
- 인민군 창건 중앙보고대회 개최 37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 사무소규정」 공개 41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공개 48

■ **대남동향**

- 대남 반정부 노동자투쟁 선동 59
- 남한의 환경단체에 「반핵투쟁」 선동 63

■ **대외동향**

- 핵문제관련 「외교부 비망록」 발표 69
- 대미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제의 73
- 일본의 핵무장화 비난 76

■ **남북관계동향**

-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 동향 ... 79

자 료

- 북한 「자유경제 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규정」 전문 89
-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전문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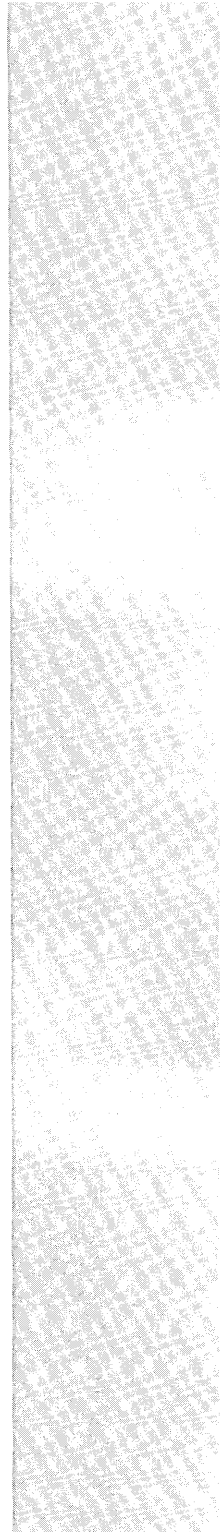
특 집

-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조연설문 및 질문답변내용 117
- 북한의 경제전략과 개방 전망 149

■ 북한일지

■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동정

무 한 동 향



대내동향

- 김일성, 김정일 생일행사 동향
-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 개최
-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 개최
- 「사로청」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인민군 창건 중앙보고대회 개최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 사무소규정」 공개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공개

對內動向

김일성, 김정일 생일행사 동향

1. 김일성 82회 생일행사 동향

개 요

- 생일 경축분위기 제고를 위해 매일 1만여명의 주민들을 동원,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참관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 생일관련 기념우표와 우편엽서, 봉투 등을 발행하였음.
 - *김일성생일 기념우표는 '62.4 이후 매년 2~20종씩 발행
- 대내행사 : 「전국 노동자 예술소조 경연」(3.14~23)을 시작으로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등 7개 행사를 진행
 - *신설행사 : 전국 노동자 예술소조 경연, 만경대상 전국여자탁구대회 등 2개
- 대외행사 : 주중 북한대사관의 영화감상모임을 비롯하여 모잠비크, 인도 등 아·태지역 20여개국의 친북단체 주관으로 도서·사진전시회, 수공예품 전시회, 영화감상회 등을 진행
- 방북축하단 : 시아누크(캄보디아), 최홍희(국제태권도연맹총재), 범민련해외본부 축하대표단 등
 - *작년 방북축하단 : 50여개 국 80여개 단체

분 석

- 금번 생일행사는 예년과 비교해 볼 때
 - 행사규모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 언론매체를 통한 경축분위기 제고나 김일성우상화 선전은 당세포 비서대회와 제9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가 겹쳐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임.
- ※ 4.1 이후 언론매체를 통한 김일성우상화 선전은 2회(중방 논설)에 불과하나 특이한 것은 김일성의 위대성 선전 말미에 어김없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촉구한 점임.
- 예컨대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가사구절처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이 세상끝까지 충직하게 모시는 것은 우리인민 모두의 드팀없는 신념”, “지나온 나날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나가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와 같은 것들임.(중방 '94.4.4)
- 앞으로 행사는 『중앙연구토론회』,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축하연회』 등 10여개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김일성이 작년 81회 생일축하 연회석상에서 연설을 통해 자주권 침해를 절대로 허용치 않겠다는 요지의 핵문제관련 발언을 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금번 축하연회에서 연설내용도 주목됨.

※ 김일성 82회 생일행사 동향

행 사	일시 및 장소	내 용
전국노동자 예술소조경연	3.14~23, 평양	○참가자 : 시·군과 도 경연에서 선발된 700여명의 노동자 예술소조원 ○종 목 : 기악, 노래무용 작품 등 650편 *금년 신설행사
만경대상 전국 여자탁구대회	3월초, 평양	○참가단체 : 각 시·도 대표 선수단 (우승 : 평남도팀) *금년 신설행사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4. 4~ 김일성경기장	○참가자 : 체육선수, 평양 시내 근로자, 청소년학생 ※1969.4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여 창설 된 북한 최대규모의 종합체육대회
미술작품 전시회	4. 5 조선미술박물관	○전시작품 : 김일성부자 업적 형상작품
영화상영순간	4. 7~16 각 시·도 소재 영화관	○상영영화명 - 예술영화 『조선의 별』, 『민족의 예 술』, 『민족과 운명』 등 ※ 동 영화들의 내용은 김일성부자에 대 한 충성심 제고를 촉구하는 것이 주 류를 이루고 있음.
중앙사진 전람회	4. 8 인민문화궁전	○전시물 : 김일성 업적 찬양사진 80여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제12차)	4. 9~18 ○평양 : 만수대 예술극장 등 ○지방 : 남포· 원산 등	○참가예술단 : 외국 예술단 입북 (4.8 현재) ○공연종목 : 성악, 무용, 기악, 공예 등

2. 김정일 52회 생일행사 동향

개 요

- 북한은 김정일 52회 생일(2.16)을 맞아 언론매체를 통해 김정일업적을 찬양하는 가운데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 바
 - 대내적으로는 『2.16 예술상 개인 경연』을 시작으로 사상·예술·체육분야에 걸쳐 20여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 대외적으로는 친북단체를 동원, 기념집회, 도서·사진전시회, 영화 감상회 등을 개최하고 “인민의 아들 김정일” 등 김정일 찬양도서를 10여개 국가에서 출판·배포하였음.
- 또한 경축분위기 고조를 위해 주민들에게 쌀 및 식용유 등 특식을 배급하고 백두산밀영, 장자산 혁명전적지 등 김정일 관련 혁명사적지를 참관시켰으며, 학위·학직 및 “영예의 붉은기” 등 각종 칭호를 수여하였음.
 -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충효심 제고를 위해 김정일찬양 작품의 제작 및 배포, 전국적인 영화상영과 경축공연 등이 있었음.

분 석

가. 전반적 특징

- 생일행사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사종목에 있어서는 다양화되었는 바,
 - 김정일의 치적과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행사(19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특히 『사로청』·『여맹』 등 사회단체들의 연구토론회를 개최, 사회단체를 통한 김정일 위대성의 저변확대를 꾀하였음.
- 또한 생일행사 이외에 김정일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선포 20주년 기념행사를 생일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경축분위기를 제고시켰음.
- 언론보도에 있어서 전년도는 권력세습의 당위성과 김정일의 영도자로서의 자질 부각에 중점을 둔 반면
 - 금년도에는 김정일이 이룩한 각 분야의 ‘업적찬양’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특히 2월 들어 “위대한 스승” 제하의 『평방』 연속기획물을 통해 김정일의 위대성을 중점 강조하고 있음.
- 한편 해외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친북단체를 동원,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바
 - 『주체사상국제토론회』(우간다), 『김정일저작연구회 연합학술회』 결성(일본) 등이 신설되어 행사가 다소 확대되었음.

나. 분야별 특징

대내행사

- 생일관련 행사는 23개(2.11 현재)가 진행되었는 바
 - 『전국 리경제선동대 경연』, 직맹·여맹·농근맹의 김정일 위대성 연구토론회, 청년사업부문 중앙연구토론회 등 5개 행사가 신설되었고,

-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는 전년도에 국가체육위원장만이 개막식에 참석한데 비해 금년에는 당비서 김종린, 정무원 부총리 장철 등 당·정 고위 간부들이 참석함으로써 대회를 격상시켰으며
- 『2.16 예술상 개인 경연』은 참가대상에서 예년과 달리 해외동포가 참가하지 않아 축소된 가운데 진행되었음.
- 특히 『인민군 육·해·공 장병들의 충성의 결의모임』과 『전국학생소년들의 충성의 결의모임』 등을 개최, 군과 청소년들의 김정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맹세행사를 진행하였음.

○ 행사 내용면에서는

- 중앙사진전람회, 미술전람회 등 김정일의 위대성과 업적을 부각시키는 행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 개막사 및 연설에서도 각 분야에서 이룩한 김정일의 업적을 중점 부각시키는데 대부분을 할애하였음.

○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음.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행사
2.16 예술상 개인경연 (제4차)	1.18~ 봉화예술극장	○종 목 : 성악, 기악 등 2개 ○참가대상 : 중앙과 지방의 전문예술단체 예술인들과 평양음악무용대학 및 각도 예술대학의 교직원·학생들 *해외동포 불참으로 행사규모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진행
백두산상 체육경기 대회	2. 1~ 평양시 송구 경기관	○개막참가자 : 당비서 김종린, 정무원 부총리 장철, 국가체육위원장 박명철 등 당·정 고위간부 및 선수들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행사
		○대회종목: 구기 및 기록경기, 국방체육, 민속경기 등 30여 종목 *전년도에 비해 당비서·정무원 부총리가 참석하여 대회비중 격상
전국 리경제 선동대 경연	2. 4~ 평양	○기본주제: 가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참가자: 도 예선 통과 12개 단체 ○종 목: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 덕성의 위대성,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시·노래·제창 등 *금년도 신설
김정일위대성에 대한「직맹」일꾼들의 연구토론회	2. 7 평양	○참석자: 「직맹」위원장 주성일을 비롯한 중앙위, 평양시내 직맹 관계자 *금년도 신설
중앙사진 전람회	2. 8 청년중앙회관	○개막참가자: 당비서 김기남(개막 연설), 정무원 부총리 장 철 ○전시내용 - 『전승』 40돌 경축행사 장면 - 인민들의 일심단결 장면 - 김정일에 대한 군·민의 충성장면 등
청년사업 부문 중앙연구 토론회	2. 8 사로청 중앙회관	○참가자: 당비서 김중린, 사로청위원장 최 용해를 위시해 평양시내 사로청 관계자, 청년학생 등 *전년도는 중앙연구토론회를 개최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행사
미술전시회	2. 9 조선미술 박물관	○개관 참가자 : 정무원 부총리 장 철(개관사), 평양시내 미술창작가들, 미술애호가들, 근로자들 ○전시물 - 김정일의 혁명업적과 위대성 형상작품 *전년도는 김정일의 성장과정·영도성 등 형상화 작품 전시
제3차 전국 청년과 학기술전시회	2. 9 3대혁명 전시관	○전시물 - 외상지혈, 화상 비복지압을 비롯한 5, 674종에 6,512점의 발명 및 창안품 * '89.1 김정일 지시로 추진해 온 『청년과 학기술행군운동』의 일환
김정일 위대성에 대한 여맹일꾼 연구토론회	2. 11 중앙노동자 회관	○참석자 : 여맹서기장 강관선, 근로단체 출판사 부주필 백금실, 평양시 여맹위원장 김인숙 등 *금년도 신설
제3차 백두산상 국제피겨대회	2.12~16 빙상관	○참가국 : 러시아,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체코,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북한 *전년도에는 9개국 이 참가한 반면 금년도에는 10개국 참가
영화상영 주간	2.13~ 대동문영화관	○영화명 - 기록영화 “송고한 염원을 지니시고”, “영광으로 빛나는 고향집”, “빛나라 정일봉” 등 7편 -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심장에 남는 사람” 등 5편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행사
제9차 전국 청소년들의 축전	2.12-4월중순 청년중앙회관	○행사내용 -정치축전, 경제축전, 예술축전, 체육축전
시낭송 모임	2.12 백두산 밀영 『고향집』 앞	○참가자 : 작가동맹시인, 양강도내 근로자, 혁명전적지 답사자 등 ○낭송시 : “백두산 밀영집이 있어”, “만대에 빛나라 정일봉”, “위인의 걸음”
공연주간	2.13~17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등	○종목 -김정일 지도로 창작된 혁명가극·혁명연극(『밀림아 이야기하라』, 인형극 『울리지 않는 종』 등) -근로자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 *금년도 신설
『농근맹』의 김정일 영도 입적연구 토론회	2. 14 평양	○참가자 : 농근맹 위원장 최성숙 등 농근맹 관계자 *금년도 신설
인민무력부 경축야회	2. 15 전승광장	○참가자 : 국방위원장 부위원장 인민군총참모장(최광), 인민군 사로청위원장 이영선(발언) 등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제하의 공연 진행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경축연회	2.15 청년중앙회관	○참가자 : 최태복, 김중린, 김복신(당비서) 정무원부총리 장철 등 당·정 고위간부를 위시해 평양시 청년학생, 외국대표단 등 ○야회제목 : “청년전위들이 부르는 2월의 노래”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행사
당중앙위 경축연회	2. 15 목란관	○참가자 : 계응태, 김중린, 황장엽(당비서), 지재룡(당부부장), 외국대표단 등 ○연설 : 황장엽(당비서) -김정일이 당·국가·혁명무력의 전반사업 을 영도하고 있다고 발언
전국학생 소 년들의 충성 의 결의모임	2. 15 평양	○참가자 : 정무원부총리 장철을 위시한 관 계자 및 평양시대 학생소년들 ※『김정일선생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 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개 촉구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	2. 16 평양체육관	○참가자 : 정무원 총리 강성산, 부주석 박성 철,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당비서 최태복 등 당·정고위간부, 각 도 소년단 대표, 과 학자, 예술인, 체육인, 학부형 등 ○보고 : 최용해(사로청위원장)
청년전위들 의 충성의 맹세모임	2. 16 김일성경기장	○참가자 : 부주석 박성철,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당비서 계응태 등 당·정고위간부 및 항일혁명투사, 공화국 영웅, 체육인, 예술 인 등 ○보고 및 토론 진행
집단체조	2. 16 평양체육관	○참가자 : 당중앙위 위원·후보위원, 각급기 관 관계자, 문화예술분야 관계자 등 ○제목 : “당의 품은 영원하리”
인민군 육· 해·공 장병 들의 충성의 결의 모임	2. 16 백두산밀영 고향집	○참가자 : 인민무력부 관계자, 각 군장병, 군관, 군인 등 ○부호문헌해설과 혁명사적지 참관행사 진행

문예물 창작

- 만수대창작사 등 6개 문예단체들은 김정일의 위대성과 업적을 칭송하는 문예물을 창작하였는 바
 - － 전년도에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등 5개 문예단체에서 작품을 창작하였음.
- 내용면에서는 전년도에는 창작되지 않았던 김정일형상 미술작품이 조선인민군 창작사에서 창작된 것이 특징임.

창작사	내용
만수대창작사 및 조선화창작단	○주 제 : 김정일영상 형상 작품 ○창작물 : 조선화, 보석화를 위시해 조각, 수예, 공예, 도자기 등 기념품 수천점
출판총국	○도서 :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27권을 비롯 “위대한 인간 김정일 2”, “희대의 영장 김정일장군” 등
작가동맹	○주 제 : 김정일 위대성 칭송 ○작품장르 : 장·중·단편소설, 시, 가사문학, 아동문학, 극문학 등 50여편
조선인민군창작사	○주 제 : 김정일 형상 작품 ○작품명 －조선화 “백두의 영장 김정일장군” －목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 －수채화 “여성해안포병들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등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예술영화 임진왜란 2부 “홍의장군” ○기록영화 “전환”

각종 칭호 수여

- 북한은 김일성부자 생일, 당 창건 기념일 등에 경축분위기 제고를 위해 주민들에게 각종 칭호를 수여하고 있는데
 - 금년 생일에도 과학분야 종사자 438명에게 학위·학직을, 경제단체 84개 단위들에 3대혁명 붉은기 등 다양한 칭호 (총 844개)를 수여하였는 바
 - 전년도에는 637개 학위·학직 등의 칭호를 수여한데 비해 다소 규모가 확대되었음.

구 분	수 여 자
학위·학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 수 : 최동윤(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등 4명 ○ 부교수 : 정경재(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등 47명 ○ 박 사 : 김종권(김일성종합대 실장) 등 31명 ○ 준박사 : 김영진(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등 391명
3대혁명 붉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중 3대혁명붉은기 : 남포유리연합회사 화학유리 직장계기작업반 등 6개 단위 ○ 3대혁명붉은기 : 평양강철공장 8.3 인민소비품직장 박판작업반 등 78개 단체
영예붉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중 영예붉은기 : 양강도 보천인민학교 ○ 영예붉은기 국기훈장 1급 : 평북 창성고등중학교 등 8개교 ○ 제3차 7개년계획 완수 영예붉은기 : 시중광산 등 62개 단위 ○ 공동순회 우승기 : 신창탄광 등 59개 단위
『26호 모범 기대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직포부재공장 등 7개 단위
모범탁아소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예의 1월16일 모범탁아소 : 등 14개 ○ 영예의 1월25일 모범유치원 : 등 36개

언론매체 찬양 보도

- 2월 들어 중·평방 등 언론매체들의 김정일 찬양보도를 일층 강화하고 있는 바, 그 논조는
 - 각 분야에서 김정일의 위대성과 업적을 중점 부각시키고 있으며
 - 특히 김정일이 주민들의 일심·통일 단결에 공헌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음.
- 주요 언론매체들의 김정일 찬양사례는 다음과 같음.

일시	언론매체	제 목
2. 1	중 방	○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기치
2. 2	중 방	○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주체를 세우시어
2. 3	중 방	○ 통일단결의 전통을 더욱 빛내이시는 일에서
2. 4	중 방	○ 누리에 넘쳐나는 2월의 환희와 기쁨
2. 5	평 방	○ 위대한 영장을 진두에 모신 우리 인민 군대는 필승불패이다.
2. 6	중 방	○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천만대에 빛나라
2. 7	중방정론	○ 인민의 영광
	"	○ 대기념비적 창조물건설에 깃든 빛난 향도
2. 8	중 방	○ 누리에 빛나는 위대한 존함
2. 9	평 방	○ 우리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시려고

일시	언론매체	제 목
2.10	중방정론	○ 시대의 행운
2.12	중방논설	○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결정적 담보
2.13	중방	○ 오직 주체의 한길로
2.14	중방정론	○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결정적 담보
2.15	중방	○ 자력갱생의 길위에 빛나는 향도의 자욱
2.15	평방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련된 영도에 술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2.16	로동신문 사설	○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에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필승불패이다.

해외축하단 방북

- 김정일생일 축하사절단으로 『카나다 공산당 맑스 레닌주의 대표단』 등 4개 축하단이 방북하였음.
 - 우루과이 공산당 대표단
 - 타이 사회행동당 대표단
 -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대표단
- 전년 15개 축하단이 방북한 것에 비해 축소되었는 바 이는 해외 친북단체 행사가 확대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

해외 친북단체 동향

- 해외 경축행사는 친선협회 및 주체사상연구소조 등 친북단체들에 의해 개최되고 있는 바
 - 금년 생일은 전년에 비해 다소 확대되는 경향이며
 - 『김정일저작연구회 연락협의회』 결성, 주체사상국제토론회 개최 등을 신설하였음.

행 사 명	개 최 지
『김정일저작연구회 연락협의회』결성	일본 오사카
체육 및 문화행사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인도)
경축집회 및 모임	부룬디종합대학 등 20여개국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탄자니아 등 10개국
연구토론회	짐바브웨 등 3개국
탁구경기대회	네 팔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우간다
김정일흠모작품창작발표회	이집트 등 2개국

칭호 수여

- 김정일에 대한 해외 생일 경축사중 “태양빛 및 생물의 족장” 등의 국가 공식 칭호 수여는 처음임.

국 가 명	일시 및 장소	칭 호 명
나이지리아	2. 5 궁전	“태양빛 및 생물의 족장”
나카라과 그라나다시	2. 6 그라나다시청	명시에시민중

※ 예년에는 각국의 도로, 건물 등에 김정일 이름 명명

종합평가

- 상기 생일행사를 종합해 볼 때 금번행사는
 - 김정일이 각 분야에 걸쳐 '능력있는 영도자'임을 주민들에게 부각시킴과 아울러
 -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맹세케 한 행사였다고 분석됨.
- 또한 동 행사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과 일편단심을 중점 강조, 체제결속의 기회로 삼았으며
 - 특히 전년도에 비해 각계각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포상을 확대수여함으로써 경제난, 노력동원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해소와 사기진작의 계기로 동 행사를 활용하였다고 평가됨.

(주간 북한동향 제164호)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개최

개 요

- 북한은 3.31 평양체육관에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강성산 총리 등 당 고위인사들과 당 세포비서·당 일꾼 등 10,6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이래 최초로 『전당 당 세포비서대회』를 개최하였음.

- 대회는

제1일째 회의에서

- ① 개회사(당 선전담당비서 김기남)
- ② “김일성 축하문” 전달(계응태 낭독)
- ③ 김기남 보고가 있었고

제2일째 회의에서는 토론회(경험사례)가 진행되었음.

※ 당 세포비서 대표들은 3.25 평양에 집결, 주요 혁명사적지와 만경대·대성산 참관, 예술공연 관람 등 일정을 가졌음.

※ 참석자 호명순으로 볼 때 당 서열은 지난 최고인민회의('93.12.9)시와 달라진 바 없음.

대회문건요지

가. 김일성 축하문

- 당 중앙위원회의 발기에 의하여 1991년에 전국 당 세포비서 창설대회가 진행된 다음 전당적으로 충성의 당세포

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당 세포비서들의 기능과 역할이 전례없이 높아졌음.

-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도전으로부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임.
- 당 세포는 당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거점이며 당원들을 당 중앙위원회에 연결시키고 당과 대중과의 현실적 연계를 실현하는 거점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발전으로 조직 동원하는 거점임.
- 모든 당 세포비서들은 높은 책임성과 영예감을 가지고 자기 세포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충성의 세포로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전투적인 세포로 만들어야 하겠음.

당 세포의 5대 과업

- 첫째, 당 중앙위의 유일적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며
 둘째, 당 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셋째,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며
 넷째,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다섯째,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는 것

나. 김기남 보고

-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친히 발기한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는 우리 당이 창건된 후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대회임.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정치사상적 공세와 군사적 위협, 경제적 봉쇄책동을 짓부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강화하고 영도적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달려있음.
 - 당 세포는 우리 당을 받들고 있는 초석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혁명 초소임. 당 세포를 강화하는 여기에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주제를 강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음.
- 우리 당이 영도의 계승문제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염원에 맞게 원만히 해결한 것은 당 건설에서 거둔 가장 자랑찬 성과임.
 - 당 세포와 세포비서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일적 영도밑에 전당, 전민,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대열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를 저해하는 사소한 현상도 허용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여 제때에 극복하여야 함.
 - 지도자 동지가 1991년 5월에 있는 전국 당 세포비서 강습회에 보낸 서한 “당 세포를 강화하자”에서 지적된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는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위대한 구호임.

- 당 세포와 세포비서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을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꾸리고 물질적 준비도 빈틈없이 갖추어야 함.

분 석

- 『당 세포』는 대중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말단 전투단위이며(당 규약 41조)
- 『당 세포비서』는 당 세포 총회에서 1년 임기로 선출되는 조직으로서
 - 말단 기층 당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당의 핵심이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초급 정치일꾼임.
 - 따라서 당 세포비서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당원과 근로대중에게 중앙당의 결정을 확산시키는, 소위 『군중과의 사업』인 바
 - 이번 『대회』에서 현장에서의 애로와 대중의 생각 등에 관한 경험토론이 중요한 하나의 순서로 진행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임.
- 이번에 개최된 『당 세포비서 대회』는
 - 1945년 노동당 창당 이래 최초로 “김정일이 친히 발기한 데 따라” 개최되는 대회로서
 -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국가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상층부

- 전체회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결정된 정책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관철시키는 당의 하층부 전체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 개최(4.6)를 앞두고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됨.
- 동 대회에서 발표된 김일성 축하문, 김기남 보고 등 두가지 문건의 특징은
- 김정일에 대한 충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당 세포비서의 역할 제고 등을 역설하면서
 - 특히 김정일 인품을 찬양,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을 강조한 점임.
 - 김정일은 축하문을 통해 김정일을 “인민적 영도의 품모와 자질을 갖춘” 인물로 추켜 세웠으며
 - 김기남의 보고에서도 김정일의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을 촉구하였음.
 - 김일성 축하문에서 “당 영도의 계승문제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염원에 맞게 원만히 해결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성과”라고 지적함으로써 후계문제를 둘러싼 의혹의 여지가 없음을 명백히 했음.
- 이들 두 문건의 내용과, 대회 6일전에 이미 세포비서 대표들을 평양에 결집, 환대성 행사들을 가졌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당 세포비서 대회』는
- 각 지방의 당 세포비서들을 평양으로 초치, 이들을 환대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 대회를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당에 대한 소속감을

재확인시킴으로써 당 및 사회의 기층을 재정비하며

— 경제건설 문제 등 앞으로의 과업을 결의케하여 당 세포 비서의 역할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공업부문 당 세포들은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주체공업의 위력을 강화해 나가며
- 농업부문 당 세포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당이 제시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고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당 세포들은 당원·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에로 조직 동원할 것을 역설(김일성 축하문)

※ 3.31자 로동신문도 이번 『대회』의 성격을 ▲ 충성과 효성의 대회 ▲ 사회주의 위업 완성의 신념과 의지의 대회 ▲ 사회주의 총진군의 대회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 이 시점에서 당 역사상 처음으로 『전당 당세포비서 대회』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 최근들어 중앙당의 결정이 사회의 기층까지 일사불란하게 먹혀들어 가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고
 -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국제적 고립으로 기층 당원 및 주민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
 - 러시아, 중국으로의 탈출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 저변 와해현상 발생
 - 전쟁위기 발언 등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 가중
- 경제정책 실패 등에 따라 김정일의 위상이 손상, 후계체제 구축과정이 원활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등의 내부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간 북한동향 제170호)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 개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가 4월 6일 개막, 3일간의 회의 일정을 끝내고 8일 폐막됐다.

이번 북한최고인민회의는 개막전부터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정세 고조분위기 등과 맞물려 적지않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의 결렬에 뒤이은 북측의 서울불바다론 제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초긴장국면에 빠져 들었고 ~~북한핵시설의 개사찰을 요구한 남북관계가 초긴장국면에 빠져 들었고~~ 북한핵시설의 재사찰을 요구한 유엔안보리의장 성명이 채택(4.1)됨에 따라 이들 문제에 관한 북한의 중대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같은 내외의 관심사들과는 무관한 3가지 의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 수행문제 △93년 예산결산 및 94년 예산심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안승인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야 할 「역사적 시기」에 열린다는 점을 강조, 이번 회의가 경제문제에 큰 비중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최고인민회의 전체 대의원 6백53명중 6백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종래와 달리 조직문제가 상정되지 않았으며 합영법의 승인을 포함한 완충기과업 수행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의제를 중점 처리했다.

첫번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 수행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보고연설에 이은 토론과정을 거쳐 이에 관한 6개항의 최고인민회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북한은 지난해의 당중앙위 제6기21차 전원회의(93.12.8)에서 제3차7개년경제계획(87~93년)의 실패를 시인한 후 향후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골자로 하는 경제전략방향을 결정했었다.

◆ 식량증산문제를 제1과제로 삼아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러한 당의 경제정책을 심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배경에서 강성산연설과 6개항의 최고인민회의 결정은 새경제전략인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에 입각해 증산·절약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역설했다.

앞으로 3년간의 「완충기 과업」 수행기간 중 추진될 부문별 과업을 간추려 보면 농업의 경우 주체농법으로 알곡 1천5백만 톤 생산목표를 달성하고 완충기에 트랙터 3만대, 화물자동차 1만대 이상을 생산키로 했다.

특히 강성산은 보고에서 농업제일주의가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의 제1과제라고 지적,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촌4화사업(수리화·전기화·기계화·화학화)의 완수를 촉구하고 녹색혁명을 일으켜 정보당 12~15톤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개량 연구 등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정비보강함으로써 천생산

은 1.2배, 신발생산은 1.1배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지방원료에 의한 소모품 생산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강조했다.

대의 무역부분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정책제시는 없었으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성을 띠겠다는 의욕을 보였고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품 생산증대에도 주력할 뜻을 비쳤다.

이밖에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을 통해 이례적으로 원유탐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시했다.

원유공업부분과 관련해 『투자를 늘려 탐사설비와 장비를 강화하며 유망지구들에 대한 탐사에 힘을 집중하여 더많은 원유 매장지를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긴축 예산편성, 재정난 반영

이것은 러시아·중국 등지로부터의 원유공급 중단 및 감소에 따른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라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두번째 의제인 예산문제는 재정부장 윤기정의 보고에 이은 심의 과정을 거쳐 총규모 1백88억7천5백9만달러(북한화 4백15억2천5백19만원)의 94년도 예산을 책정·발표했다.

전년과 대비해 수입부분은 2.4%, 지출부분에서 3.2% 증가한 것이지만 92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 6.3% 가량 증가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낮은 폭의 증가에 그친 것이다.

올해의 예산총규모면에서는 3.2%의 증가율을 보여 전년도의 2.4%보다 0.8% 증가된 것이나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초긴축예산을 편성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70년대 북한의 예산증가율은 매년 평균 14.9% 수준이었고 80년대에는 7.0%에 달했다. 그리고 87년부터 시작된 제3차7개년계획 기간중 평균예산증가율은 5.2%에 달했었다.

북한이 이처럼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은 무엇보다 제3차7개년경제계획의 실패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산업시설의 가동율의 급격한 저하,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세입증대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지출 내역면에서는 「인민경제비」가 전년비 3.2%, 「사회문화시책비」 전년비 2.8% 증액했는데 이는 92년 대비 인민경제비 3%, 사회문화시책비 2.1% 증액보다 약간 상회한 것이다.

군사비는 11.6%로서 전년비 4.1% 증액했는데 총예산 증가율 3.2%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군사비의 상당부분을 「인민경제비」에 은닉해 왔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본다면 실질 군사비는 총예산의 3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별 투자증가 내역에서는 농업(6%), 경공업(5.4%), 무역(4.1%) 순으로 정해져 향후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 경제전략방침으로 제시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농업부문의 투자를 대폭 증가 편성한 점 등은 최근 체제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달고 있는 식량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4년도 예산편성 내역〉

구분	금액	구성비(%)	전년비(%)	
수입	415억2,519만원 (188억7,509만달러)	100.0	102.4	
지출	415억2,519만원 (188억7,509만달러)	100.0	103.2	
지역내역	인민경제비	281억6,396만원 (128억180만달러)	(67.8)	103.2
	사회문화비	82억1,826만원 (37억3,557만달러)	(19.8)	102.8
	군사비	48억1,692만원 (21억8,951만달러)	11.6	(104.1)
	관리비	3억2,605만원 (1억4,821만달러)	(0.8)	98.8

※ ()는 북한발표 구성비·증가율을 근거로한 내외통신사 추계

※ 적용환율 : 미화1\$ = 북한화 2.20원

(주간 내외통신 제895호)

「사로청」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개 요

- 북한은 3.14~15 사로청 위원장 최룡해(보고)를 위시하여 중앙위위원, 후보위원, 중앙기관과 도·시·군 공장기업소, 대학 사로청위원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로청 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를 평양에서 진행하였는 바
- 동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사로청 초급단체 강화지시 관철을 위한 과업과 사로청 선전선동체제를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토의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보고 및 토론 요지 >

- 사로청 조직들과 일꾼들 앞에는 오늘 모든 초급단체를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쇄소리나는 조직으로 꾸리고 500만의 청년들을 김정일을 목숨바쳐 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음.
- 초급단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급단체 위원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 청년핵심으로 꾸리며 사로청 일꾼들이 초급단체에 내려가 말단 기층조직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여야 함.
- 또한 사로청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며 전체 초급단체들에서 『청년전위 모범초급단체』 칭호 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함.

-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전선동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이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함.

분 석

-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 1946.1.17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어
 - 1964.5 제5차대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된 노동당 청년전위조직으로서 만 14~30세까지의 근로자·학생·군인 등 약 500만명이 가입된 북한 최대 사회단체이며
 - 금번 전원회의는 금년도 전반기 정기회의임.
 - ※ 전반기 사로청 전원회의(통상 연 2회 개최)는 주로 당해 연도의 중점 추진과업 및 방향 결정
- 북한은 '93.2.18~22 『사로청』 8차대회를 개최, 청년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노동당시대의 혁명전위”로서 경제과업 수행에 영예를 떨칠 것을 독려하면서
 - 아울러 김정일중심으로의 일심단결과 김정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의 보고 및 토론은 사로청에 대한 김정일 지시 관철을 위한 과업을 중점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 초급단체 강화사업을 전조직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과
 - 청소년 학생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사로청 선전선동 체계의 실속있는 운용을 독려하였음.

○ 결국 이번 전원회의는

- 이제까지 수행된 선전선동사업이 형식적이어서 각 분야에 걸쳐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질책과 아울러
- 청소년학생층에 대한 실속있는 사상교양을 독려, 김정일
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 청소년들의 의식화로 침체된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마련
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간 북한동향 제168호)

인민군 창건 증양보고대회 개최

개 요

- 북한은 군창건 62돌(4.25)을 맞아 4.24 당·정·군 고위간부, 평양주재 무관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문화회관』에서 증양보고대회(보고자 : 김광진 차수)를 개최하였음.

〈보고 내용 요지〉

-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과의 치열한 대결과 투쟁속에서 진행되며 그것은 혁명무력의 무장적 담보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지난해 미 제국주의자들과 벌인 정치·군사적 대결은 총포 소리없는 대혈전이었으며 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결사전이었음.
- 경제건설은 사회주의 혁명진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중요사업임.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함.
-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생활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임.

분 석

- 금번 인민군 창건 기념 중앙보고대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비절감을 위해 행사규모를 줄여 진행하였음.
- ※ 북한의 군 창건일은 '48.2.8로 기념해 오다 '78년부터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 산하의 조선인 지대장을 맡게 되었다는 '32.4.25로 변경하였음.
- 동 대회 개최시 총참모장(최광)이 보고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최광(77세)보다 열살이상이나 연소한 차수 김광진(66세, 인민무력부부부장)이 보고한 것은
 - － 북한군 상층부의 세대교체 가능성과 관련시켜 볼 수 있음.
- 동 대회 보고내용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하였음에도 충성심 촉구면에서 김일성에 대한 언급빈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음.

구 분	61주년	62주년	비 고
보 고 자	최 광	김 광 진	로동신문 사설은
김일성 언급 회수	7회	8회	김정일 언급 증가
김정일 언급 회수 (최고사령관)	25회	10회	

※ 61주년 최광 보고

- － 우리 인민군대 안에 당의 영도 체계를 철저히 세워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물과 불속이라도 뛰어들어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군풍과 군인정신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62주년 김광진 보고

- 모두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 위업 완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 이외에 이번 62돌 군 창건 기념행사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 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과 예술단들이 군부대를 방문하고 선물전달과 경기, 공연을 진행하는 등 『군민일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 북한의 군 노동력이 경제건설 현장의 생산주체가 되고 있는데 따라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내세우며 경제건설을 위한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 또 김부자가 '82-'91년까지 동행하여, 군부대를 기념 방문하다가 3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동(동맹) 방문한 점
 - 그리고 예년의 무관 초청 인민무력부 연회배설에서 나아가 군 고위간부들이 무관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등 평양주재 무관단에 대해 더욱 비중을 두고 배려하고 있는 점 등임.

인민군 창건 62주년 기념행사

일자	행 사 내 용
4. 22	○ 무관단 강건군관학교 참관
4. 23	○ 인민무력부 각국 무관 초청 연회
4. 24	○ 이인모, 군부대 방문 - 『친하제일 김정일 장군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는 내용의 글 전달

일자	행 사 내 용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광 등 군 고위간부 인민무력부 방문한 무관들과 한반도 정세 논의 ○ 창군 62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 김일성 부자 군 고위간부 대동 제564군부대 방문, 기념촬영 ○ 당·정 고위간부들, 각 육·해·공군 부대 및 인민경비대 위문 ○ 해방전쟁 기념탑 앞 광장에서 무력부 주최 경축야회

(주간 북한동향 제174호)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 사무소규정』 공개

개 요

- 북한은 '93.1.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공포한 이래 후속조치 일환으로
 - '93.11.29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정무원 결정 제75호)을 제정하는데 이어 '94.3.15 중앙통신을 통해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을 지난 2.21 정무원 결정 제8호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기본법으로서
 - 동법 제6조에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고 적시함으로써 동법에 따라 세부시행규칙 성격의 규정들을 각 분야별로 제정할 계획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은 전문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조문별로 분류되어 있음.
 - 1~ 4조 : 규정의 제정취지, 사무소 설치·운영의 주체와 형태, 상주기간 및 정원 등
 - 5~ 9조 : 상주대표사무소의 임무, 기능, 활동범위 제한 등
 - 10~18조 :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등록증·상주대표증 발급절차, 구비서류 등

- 19~30조 : 상주대표사무소의 의무, 철수·청산절차, 벌칙, 분쟁 심의 등

규정의 주요내용

-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할 수 있음(2~3조)
 -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포함
-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정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음.(4조)
 - 단,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 등 행정기술 성원과 운전수, 정비원 등 봉사성원은 별도
- 상주대표사무소의 임무는 본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의 봉사활동이며, 필요한 경우 본기업의 위임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 받는 등의 위임대리 업무활동을 할 수 있음.(5~6조)
 - 그러나 본기업의 위임대리 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래·위탁판매를 하거나 북한내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목적의 업무활동은 불가하며
 - 북한과 외국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 가능
- 외국기업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해 대외경제 위원회(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심사승인기관은 30일안에 승인여부 결정후 10일안에 지대당국에 통보해야 함.(10~16조)

- 상주대표사무소는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지대당국에 등록하고 지대당국은 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 발급
- 사무소 구성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체류증 또는 상주의 국인증 발급
- 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유효기간 만료 15일전에 재발급
-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관련 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매년 1월중 년간사업 총화자료(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함.(20~24조)
 - 상주기간 연장시 3개월전에 신청서 제출, 외국에서 반입한 운수수단·사무용품·생활용품은 판매나 전용 불가, 건물임차 또는 인력채용시 관련 기관과 계약체결 및 관련 법·규정 준수
- 상주대표사무소 철수시 30일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한 후 재정기관의 납세확인 문건을 지대당국에 제출해야 함.(27조)
-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 위반시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국외로 추방할 수 있음(28조~30조)
 -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

분석 및 평가

- 이번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 제정은 북한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지대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일련의 법령 정비 작업의 일환임.
 - 외국인투자법('92.10),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1),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93.11),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93.1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94. 2) 등 제정
 - 북한은 외자유치관련 법들의 제정 및 보완에 이어 앞으로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잇따라 제정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격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현지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 외국에 본기업을 두고 자유경제 무역지대내에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의 형식으로 진출하여 본기업의 업무를 위임처리하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는 본기업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영리목적의 업무활동은 불가하며, 독자적인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외국간 별도의 정부협정 체결 필요
- 또한 상주대표사무소의 임무를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본기업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 받은 것과 같은 위임대리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본기업을 대리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가능케 하였음.

- 북한은 동 규정에서 다른 외자유치관련 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외국기업처럼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해외교민들의 대북투자 유치를 적극 꾀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만으로는 우리기업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함.
 - “공화국령역”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북한지역만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는 바
 - 북한은 헌법에서 우리와 같은 영토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헌법 11조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규약 전문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을 완수하는데 당면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화국령역”에 대한 북한측 입장은 당연히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함.
 - 또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경계선을 휴전선으로 두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도 형식적으로는 그 효력이 이미 발효중에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화국령역”을 휴전선 이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적 준거도 없음.
 - 단,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목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일 수

는 있음.

- 동 규정내용 전반에 걸쳐 상주대표사무소 및 구성원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체적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3년의 경제개발계획 조정기간에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운영의 성과를 북한 당국이 조정 평가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개방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신청, 승인절차, 금융거래, 위반시 벌과금 등에 대해 북한의 여타 법령과는 달리 세부적으로 규정
 - － 외국기업에 대해 상주대표사무소의 구성원 수, 기능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상주기간을 최대 3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연장도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매년 재심사하는 장치 마련
 - －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북한당국이 수시로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상주대표사무소와 구성원이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 뿐만 아니라 국외추방도 가능토록 규정
- 상주대표사무소 규정은 여타 북한의 법령에 비해 그 내용이 구체적인 편이나 외국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원활한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초보적이고 미비점이 많아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다수 있다고 평가됨.
- 북한의 경제개방 및 외국투자유치관련 법령정비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 북한당국은 아직 경제개방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당면한 경제난의 극복을 위해 계속 개방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개방조치들을 적극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고 판단됨.

(주간 북한동향 제168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공개

개 요

- 북한은 '93.1.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공포한데 이어, 동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을 '94.2.21 정무원결정 제9호로 채택하고, 지난 3.16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 동 시행규정은 “기본법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라는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금의 종류·세율, 납세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전문이 8장 79조, 6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제1장(1~12조) : 일반규정
 - 제2장(13~35조) : 기업소득세
 - 제3장(36~42조) : 개인소득세
 - 제4장(43~52조) : 재산세
 - 제5장(53~58조) : 상속세
 - 제6장(59~64조) : 거래세
 - 제7장(65~73조) : 지방세
 - 제8장(74~79조) : 제재 및 신소청원
- ※ 부록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93.1 공개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 규정의 주요내용 >

○ 제1장 : 일반규정

- 공화국영역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
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영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
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함.
 - 외국인 투자기업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임.
 - 외국기업은 공화국영역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
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영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
직임.
- 공화국영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
국영역밖의 조선동포에게도 적용하고, 공화국영역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일 이후 30일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의미하며,
외국투자 기업은 기업등록후 20일내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받아야 함.
 - 세무등록시에는 기업등록증 사본과 함께 세무등록신청
서를 제출
- 재정부 및 도·시·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에서
세금부과, 징수, 세금납부관련 감독 통제업무를 담당함.
- 세금관련 외국정부와 협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세
금을 납부함.

○ 제2장 : 기업소득세

- 외국투자기업은 1.1~12.31까지 공화국영역안에서 기업활

등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납부함.

-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하며,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결산이윤의 14%
 - 자유경제무역지대밖에서는 결산이윤의 25%
 - 첨단기술, 자원개발, 하부구조건설, 공학연구, 기술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결산이윤의 10%
 - 기타 소득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10%, 밖에서는 20%
- 외국인투자기업 지사의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 납부하고, 외국기업 지사의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 납부함.
- 외국정부나 은행, 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이 런던은행간 금리 보다 낮고 거치기간 포함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면제함.
-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생산부문은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운영시에는 이윤발생 연도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 범위내에서 감면함.
- 자유경제무역지대 봉사부문 기업을 10년이상 운영시에는 이윤발생 연도부터 1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내에서 감면함.
- 총투자액 6,000만원 이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내 하부구조건설부문 외국투자기업은 이윤발생 연도부터 4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내에서 감면함.

- 손실발생시에는 4년간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의 이윤을 재투자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 하부구조 건설부문은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납세액 전부, 기타 부문은 50%를 환급함.
- 제3장 : 개인소득세
- 18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이상 체류시에는 공화국영역밖의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함.
 - 외국과 협정이 있거나, 북한내에서의 저축성 예금, 보험금, 보험보상금,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비거주자의 은행예금 이자는 면제
- 제4장 : 재산세
- 공화국영역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재산소유자가 소재지에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함.
 - 재산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제5장 : 상속세
- 공화국영역안의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과, 공화국영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영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시의 현지 시장가격으로 결정함.
- 제6장 : 거래세
-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물자를 공화국영역안에서 판매하여

- 연은 수입금, 상업(무역포함)부문에서 상품판매액, 봉사 부문에서의 봉사 수입금은 거래세를 납부함.
- 런던은행간 금리보다 낮고 거치기간 포함 10년이상 상환 기간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감면이 가능하고, 자유경제 무역지대내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여타 지역보다 50%를 감면함.

○ 제7장 : 지방세

-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총액,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을 과세대상액으로 결정함.

○ 제8장 : 제재 및 신고청원

- 연체시에는 매일 0.3%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지정기일내 세무수속미이행자, 문서위조, 탈세 등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

분석 및 평가

- 이번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제정은 북한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지대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일련의 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임.
- 외국인투자법('92.10),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93.1),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1),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 규정('94.2) 등 제정
- 북한은 외자유치관련 법들의 제정 및 보완에 이어 앞으로

로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들을 잇달아 제정할 것으로 보임.

- 동 시행규정은 납세의무자를 “공화국령역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기업은 『외국투자기업』으로 개인은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2조), 중국 등 기타 국제관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의미(※'92.10 외국인투자법 참조)
 - 『외국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령역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을 의미
 - 『외국인』의 경우 180일 이상 체류시에는 북한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나,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북한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36조)
- 동 시행규정에서는 여타 투자관련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화국령역”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나, 과세권의 성격상 “공화국령역”의 개념은 북한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휴전선이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소득세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비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사안별로 보면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북한의 세율은 14%로 중국의 15%보다 낮게 책정
- 동 지대이외 일반지역에서는 중국이 30%이나, 북한은 25% 세율 적용
- 첨단기술, 하부구조건설 등 투자장려부문의 경우, 중국의 세율을 15%이나 북한은 10% 세율 적용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제조업이나 투자장려부문에 대해 3년간은 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중국은 지역에 관계없이 2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 감면
- 또한 북한은 하부구조건설부문 총투자액 6,000만원 이상은 이윤발생시부터 4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범위내에서 감면해 주고 있으나, 중국은 수출기업에 대해 2년간 면제후 계속해서 50%를 감면
- 합작기업은 『합작법』상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데도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할 경우,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
-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범위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1년이상 거주자의 국외소득까지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중국은 1년이상 5년 미만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소득 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어 북한이 중국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음.
- 상속세의 경우, 1년이상 거주자는 “공화국령역밖”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의 확보 및

과세권의 실행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우리기업의 대북한 진출시, 북한 현지 임직원의 개인소득, 상속재산 문제등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과세권의 마찰소지가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사전에 쌍방 당국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 시행규정(12조)에서도 다른 나라와 세금관련 협정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고 규정

참고 : 북한의 경제개방관련 법령 정비현황

※ 총 19개 법령 제정 및 개정

시 기	제 정 법 령	비 고
84. 9	합영법	개정(94.1)
85. 3	합영회사소득세법	※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
	외국인소득세법	※
	외국인소득세법세칙	※
	합영법시행세칙	개정(92.10)
92.10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93. 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93.10	토지임대법	

시 기	제 정 법 령	비 고
93.11	외국투자은행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93.12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세관법	미공개
94. 2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 대표 사무소 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 표시된 법령은 사실상 폐지된 것임.

(주간 북한동향 제168호)

대남동향

- 대남 반정부 노동자투쟁 선동
- 남한의 환경단체에 「반핵투쟁」 선동

對南動向

대남 반정부 노동자투쟁 선동

개요

- 북한은 3.12 『직총』중앙위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투쟁을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임금투쟁을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발전시켜야 하며 청년학생들과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선동하였음.

< 호소문 요지 >

-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반인민적 노동정책과 임금인상억제 책동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음.
- 김○○ 반역도당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파쇼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음.
- 임금인상과 생존권을 위한 당신들의 투쟁에서 이기는 길은 타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굴복하지 않는데 있음.
- 남조선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세

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임금인상 투쟁을 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

분 석

-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의 호소문은
 - 우리날 기업체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봄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 매년 이때쯤이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투쟁과 반미·반정부투쟁을 극렬하게 선동하는 연례행사임.
 - '93.3.5 『직총』 성명,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 최근 북한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투쟁선동의 양상은
 -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점차적으로 정착되어가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모순의 관계로 설정
 -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을 노사협상과 노조의 온건화 추세에 대한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 근로자들의 투쟁목표, 노조결성방법, 파업투쟁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려는 것임.
- ※ 관련 논조
 - '93.12.25-'94.1.22 평방 논설, “남조선 노동운동권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10회 연재)
 - '94.1.30 평방, “노동운동 말살을 노린 간교한 설교”
 - '94.3.10 평방,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94.3.11 중방, “임금인상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

對南動向

대남 반정부 노동자투쟁 선동

개 요

- 북한은 3.12 『직총』중앙위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투쟁을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임금투쟁을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발전시켜야 하며 청년학생들과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선동하였음.

< 호소문 요지 >

-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반인민적 노동정책과 임금인상억제 책동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음.
- 김○○ 반역도당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파쇼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음.
- 임금인상과 생존권을 위한 당신들의 투쟁에서 이기는 길은 타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굴복하지 않는데 있음.
- 남조선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세

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임금인상 투쟁을 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

분 석

-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의 호소문은
 - 우리날 기업체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봄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 매년 이때쯤이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투쟁과 반미·반정부투쟁을 극렬하게 선동하는 연례행사임.
 - '93.3.5 『직총』 성명,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투쟁하라”
- 최근 북한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투쟁선동의 양상은
 -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점차적으로 정착되어가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모순의 관계로 설정
 -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을 노사협상과 노조의 온건화 추세에 대한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 근로자들의 투쟁목표, 노조결성방법, 파업투쟁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려는 것임.
- ※ 관련 논조
 - '93.12.25-'94.1.22 평방 논설, “남조선 노동운동권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10회 연재)
 - '94.1.30 평방, “노동운동 말살을 노린 간교한 설교”
 - '94.3.10 평방,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94.3.11 중방, “임금인상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

쟁”

· '94.3.14 민민전, “임투와 노동자세”

○ 이번 『직총』 호소문의 특징은

- 우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초보적인 생존권까지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임금인상 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비화시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 정부의 근로자 복지정책과 고통분담 호소를 노동자에 대한 “우롱과 모독”, “교활하고 파렴치한 설교”라고 매도하고
- “청원이나 협상의 방법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 노조의 극렬 과격투쟁을 조장하는 한편
- 임금투쟁을 학생 등과의 연대·공동투쟁을 통해 반미·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동한 점임.

○ 북한이 이처럼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노동현실이 극도로 열악하고 우리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타도의 대상인 듯이 사실을 왜곡하여 그들 사회주의의 우월성 선전에 악용하는 한편
- 문민정부 출범 이후 노사대립, 격렬시위, 반정부 투쟁 등이 설자리를 잃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 대한 초조감의 발로로서
- 농민, 학생, 재야·운동권 등의 반정부 연대투쟁의 불씨를 만들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임.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의 연혁】

· 결 성 : 1945.11.30 결성

62 통일교육

- 구 성 : 산하에 금속화학공업·전기석탄공업·경공업 및 상업·기계공업·임업·수산·교통·체신·교육문화보건 등 9개의 산업별 직맹조직으로 구성
하부조직으로 시·군·도 직맹위원회가 있음.
- 가입대상 : 『노근맹』, 『여맹』 등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30세 이상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 '93.10 현재 맹원수 약 160만명
- 역할 : 형식상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의 권익 옹호단체이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정책선전과 집행, 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담당
- 위원장 : 주성일
부위원장 : 김국삼 등 10명

(주간 북한동향 제168호)

남한의 환경단체에 「반핵투쟁」 선동

개 요

- 북한은 14일 한국내 『반핵평화운동연합』 등에 보낸 『조선 반핵평화위원회』와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핵폐기물 투기행위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고 나섰음.

< 선동 요지 >

- 남조선 당국자들은 1986~1992년까지의 7년동안에만 하여도 무려 일경 천조 베크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흘려보냈음. 이것은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항의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었던 러시아나 일본이 조선 동해에 버린 핵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방대한 양임.
- 남조선 당국자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죽음의 핵폐기물까지 이 강토에 마구 버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이중, 삼중으로 핵참화를 들뜨워 민족을 전멸시키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며, 이 몹서 리치는 죄악을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 우리는 귀 단체들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남조선 당국자들의 범죄적인 핵폐기물 투기행위와 핵무기 개발책동을 반대 저지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리라고 굳게 믿음.

- 우리는 이러한 공동된 의무감과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의 반핵 환경보호단체들이 남조선당국의 핵폐기물 투기행위에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며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공동조사와 공동 감시활동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귀 단체들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임.

분 석

- 북한이 이번 남한의 환경관련단체에 보낸 서신 내용은
 - 남한이 버린 핵폐기물이 러시아나 일본이 버린 핵폐기물 양보다 훨씬 많음을 날조된 수치를 인용,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후
 - “핵폐기물 투기가 물의를 일으킨 점은 여러번 있지만 자기민족이 쓰는 강·하천·바다에 버린 예는 없음”을 강조, 정부의 윤리성에 흠집을 내고
 - 단순한 대중투쟁 선동이 아니라 남한내 환경단체에 공동조사, 공동감시를 제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북한의 이번 우리측 『반핵평화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대한 핵폐기물 투기 반대투쟁 선동은
 - 지금까지의 포괄적인 반핵투쟁 선동 방식으로는 남한 사회내에서 핵문제가 이슈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 남한내에서 환경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을 이용하여 핵폐기물 투기를 환경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자연

스럽게 핵문제가 『이슈화』되도록 유도하고

- 특히 형식에 있어서 반핵투쟁 선동과 함께 남한내에서 비교적 알려진 환경관련 단체에 핵폐기물 투기행위에 대한 “공동조사와 공동 감시활동”을 제의함으로써 환경관련 단체의 활동 방향을 대정부 투쟁으로 선회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주간 북한동향 제168호)

대외동향

- 핵문제관련 「외교부 비망록」 발표
- 대미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제의
 - 일본의 핵무장화 비난

핵문제관련 『외교부 비망록』 발표

개 요

- 북한 외교부는 4.20 핵문제와 관련하여 IAEA와 미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해설하는 장문의 『비망록』을 발표하였음.

< 내용 요지 >

1. 우리의 특수지위의 발생과 본질

- 우리가 '93.6.11 조·미 공동성명에서 조약 탈퇴 효력 발생을 임시 정지시킨 것은 조·미 협상이 평등한 기초위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방적으로 취한 잠정적 조치임.
- 담보협정에 대해 말한다면 핵무기 전파방지조약 제3조 4항에 따라 맺어진 것으로 우리와 기구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조약 탈퇴와 함께 '93.6.12부터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2.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

-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담보의 연속성 보장과는 인연이 없는 문혀내기 시료 채취와 측정을 허용해 주면 기구서기국은 그것을 가지고 지난 시기처럼 불일치를 조작해 내고 특별사찰이요, 뭐요 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 앞으로 조·미 회담이 열리고 일괄타결 원칙에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동시행동 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우리의 특수지위도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임.

3. 사찰 허용 범위

- 방사화확실험소 장갑박스구역에서의 문혀내기 시료 채취와 여과장치에 대한 감마 측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담보의 연속성 보장과는 인연도 없는 것으로서 핵물질의 초기 재고량보고서에 대한 검증에 속하는 것임.
- 그러나 높은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장갑박스구역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시용액 시료는 채취할 수 있음.

4. 우리의 핵문제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의 부당성

- 국제기구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에게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의 적용임.

○ 제반 사실은 현 단계에서 우리의 특수한 지위에 맞게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통하여 점차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와 동시에 조·미 회담에 진지하게 달라 붙는다면 담보협정 이행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고 나아가서 핵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1994.4.20 평양

분 석

- 금번에 발표한 북한 『외교부 비망록』은 북한 핵시설의 재사찰을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3.31)에 대한 반응으로서
 - 북한이 핵사찰 문제에 있어 '특수지위'에 있고
 - IAEA가 북한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논리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 NPT 탈퇴 유보상태에서 탈퇴상태와 같은 효력을 기대하고 있고
 - 오직 북·미 회담 성사에 초점을 맞추어 핵문제 해결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 북한은 5월 초순 이후에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사찰 압력에 대비하여 안전조치협정 의무상의 추가사찰은 거부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가운데

- ②⁵MWe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를 IAEA에 통보하고 IAEA의 입회를 요청함으로써
- IAEA가 북한의 입회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 IAEA의 추가사찰 압력의 예봉을 피하려고 하고 있음.
- 북한이 『글로벌박스』의 시료(샘플) 채취와 여과장치에 대한 감마 측정을 거부하고 표시용액 채취를 주장하는 것은
 - IAEA의 사찰 실시 이전('92.4월 이전)에 『글로벌박스』내에서의 플루토늄 추출 등 핵활동 상황 파악을 저지하려는 의도 때문임.

(주간 북한동향 제173호)

대미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제의

개 요

- 북한은 4.28 외교부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키 위한 『평화보장체계 수립 협상』을 미국측에 제의하였음.

< 성명 요지 >

- 미국은 지난 40여년동안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로서 지닌 의무에 배치되게 합의서안들을 체계적으로 유린 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정전감시기구 마저 마비시켰음.
- '91년 3월에는 자격도 없는 남조선 군장성을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음.
-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사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정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함.

분 석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74.3.25)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미 직접회담을 처음으로 제의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되풀이 해 왔음.
 - '75.10.27 제30차 UN총회, 북한대표 연설
 - '79. 9. 5 제6차 비동맹 수뇌회의, 이종욱 총리 연설
 - '80.10.10 노동당 제6차 대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연방제 실시 선결조건
 - '84. 1.10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남·북·미 3자 회담 의제 등
- 북한의 대비 『평화협정』 주장 논거는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며
 -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 따라서 『평화협정』은 북·미 회담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 그러므로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병행하여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것임.(3자 회담 논리)
-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대미 『평화협정』 체결의 실제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음.
- 북한이 현 시점에서 대미 『평화협정』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 “서울 불바다” 거론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핵문제 관련 UN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국제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그들의 호전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평화공세의 하나이며

- 또한 새로운 협상고리를 제기함으로써 시급한 현안과제인 핵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집중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제의는 이미 지난 4월 19일 유엔주재 북한 부대사 김종수가 미국 『디펜스』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디펜스』지는 미 국무부 관리가 “현재로선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평화협정 문체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 보도하였음.

(주간 북한동향 제174호)

일본의 핵무장화 비난

개 요

- 북한은 최근 일본의 핵무장화를 집중 비난하는 가운데 3.16 로동신문을 통해 일본의 핵무장화^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비난 요지 >

- 오늘 조선반도 주변지역에서 새로운 위험한 핵전쟁의 온상으로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일본임. 일본반동들은 핵군축과 비핵지대 창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 핵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음.
- 일본의 재처리 시설들이 전면 가동하는 경우 일본은 세계 제3위의 재처리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함. 오래 전부터 핵야망을 추구해 온 일본은 이미 핵무기 발사 체계, 핵무기 제조요소들과 기술을 마련해 놓고 있음.
- 그런데 일본에서 핵무장화가 다그쳐짐으로써 불가피하게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새로운 핵군비 경쟁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음. 더욱이 일본이 우리 공화국을 해외 침략의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핵무장화 책동에 대하여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음.

- 일본이 핵무장화를 다그치는 조건에서는 북남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야무야해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될 수 있음.

분 석

- 북한은 최근 들어 ‘일본의 핵무장’을 이슈로 대일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데 금번의 비난은
-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으로 제조 가능한 핵무기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서방측 언론의 일본 핵무장 관련 보도를 북측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며
 - 일본이 북한을 “해외침략의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들어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 『일본의 핵무장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점이 특징임.
- 북한이 최근 들어 『일본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대일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 이후 북측 핵개발 문제에 대하여 가중될 대북제재 압력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고
 - 또한 21일 IAEA 이사회에서 결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재사찰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축적하면서
 - 나아가서는 일본의 해외침략의 첫번째 공격대상이 북한임을 강조,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적인 성격의 것임을 주

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북한의 대일 핵무장 비난 동향

일자·형식	내용
2.10 모스크바 방송	러시아 주재 대사 손성필 기자회견(2.10) “만약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전변시킬데 대한 구 상은 무의미하게 됨”
2.15 중방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일본의 핵 희생물이 될 수 없 으며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
2.22 민주조선	“일본의 핵무장화가 위험한계에 이르고 있 음. 극도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것임”
3.3 로동신문	“일본은 지배주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핵 무장을 추진하고 있음”
3.7 중방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일본이 핵무장화하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 화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임”
3.11 민주조선	“일본 반동들이 우리의 핵문제를 비난하면서 위협수위에 도달한 일본 핵무장을 계속 추진 할 정당성을 찾고 있음”
3.12 로동신문	“일본이 진실로 핵무장 의사가 없다면 비핵 3원칙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임”
3.14 로동신문	“일본의 핵무장이 계속 추진될 경우 북남 비 핵화 선언은 무의미해지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주간 북한동향 제168호)

남북관계동향

-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 동향

南北關係動向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 동향

개 요

- 남북한은 3.19 판문점에서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이미 철회했던 『4개 요구사항』을 다시 제기하고, “전쟁도 불사한다”고 위협하는 등 회담을 계속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퇴장, 회담이 결렬되었음.

< 회담 내용 >

1. 일시·장소 : '94.3.19(토), 10:00~10:55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2. 양측 발언 요지

【남측】

- 지난해 10월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개시 이후 북한이 ▲2개의 요구조건 제기 ▲2개의 요구조건 추가 ▲특사의 임무를 7개로 확대 ▲『공도보도문』 발표 요구등 4단계에 걸쳐 회담을 가로막는 빔장을 걸었다고 지적

- 『긴급제안』으로 북측이 ▲우리측 최고 당국자에 대한 비방·중상 즉각 중지, ▲우리 국민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 중지, ▲핵문제 우선해결 입장에서 특사교환 실현 등에 관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요구
- 특사교환은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환기, 절차문제 토의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

【북측】

- “실무절차 문제^지의 토의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며 지난 6차 접촉에서 사실상 철회하였던 『4개 요구사항』이 “지금 조성된 상태에서 지극히 정당하다”고 이를 다시 주장
- 실무접촉에 임하는 남측의 태도를 “반민족적 사대매국적”이라고 비난
- 남측이 미-북한 회담을 방해하고 특사교환을 어렵게 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강변
- 최근 남측의 대북 강경대응 움직임 등과 관련, “대화에는 대화,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것”,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 등 위협

3. 회담 결과

북측 대표단이 차기 회담 일자도 잡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결렬

분 석

○ 당초 북한은

- 지난 2월 미국과의 뉴욕 실무접촉에서, 미국이 ▲한국의 T/S '94 중지예 동의한다는 것과 ▲미-북한 3단계 회담을 '94.2.21 제네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3.1자로 발표하는 대응조치로

▲IAEA 사찰 수용과 ▲특사교환 실무접촉을 재개한다는 것을 약속하였으며(2.25, 『미-북한 뉴욕접촉 합의문』)

- 이에 따라 3.3~3.15간 IAEA의 사찰을 허용하였고, 남측의 제의에 호응하여 특사교환 실무접촉에 임하여 왔음.

○ 그러나 북한이 이번 제8차 접촉에 이르러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 그간 진행된 IAEA 사찰의 결과

- “사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 이에 따라 세계 여론이 대북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 사찰결과를 최종 판단할 IAEA 특별이사회가 미-북한 3단계 회담 예정일자인 3.21로 잡히는 등 미·북한 3단계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 미·북한 3단계 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IAEA 사찰이 완전하게 실시되고, ▲남북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가지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음.

- 또하나의 전제조건인 남북간 특사교환을 조속히 실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번 회담을 결렬시킨 데에는

-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여 그들의 대내결속과 체제 강화를 꾀하고
- 남한으로 하여금 국제공조체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없도록 하며, 앞으로의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해 나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실무대표접촉』

1. 일시·장소 : 1994.3.16(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2. 양측 발언 요지

【남측】

- 특사의 임무중 제1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돌파구 마련 문제” 가운데 북측이 문제시하는 “돌파구 마련”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북측안의 ③, ④, ⑤항을 하나로 합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 실현문제”로 하자는 절충안 제시

【북측】

- “특사교환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칙적 합의”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것을 재주장
- 『특사의 임무』로 기존 7개항을 고집, 남측 특사의 선평양방문을 계속 주장

3. 회담 결과

차기 회담 일자 합의(3.19) 이외에 별다른 합의점 없이 종료

※ 특사의 임무관련 쌍방 주장 비교

우 리 측	북 한 측
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문제	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할 데 대한 문제
② 남북합의서 이행 문제	② 긴장완화와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취할 데 대한 문제
③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 실현 문제	③ 전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데 대한 문제
	④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⑤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
	⑥ 그밖에 쌍방이 관심하는 현안문제
	⑦ 북남 최고위급이 만나는 문제

(북한 동향 제168호)

자 료

- 북한 「자유경제 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 사무소규정」 전문
-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전문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 전문

('94.2.21 정무원 결정 제8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하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할 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4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정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정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 5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하 본기업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기업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위임대리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기업의 위임대리업무 활동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드려다 되거래·위탁 판매를 하거나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 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9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을 밝히고 본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임자·대표성원들의 위임장·경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규약, 이사회 의 성원명단 같은 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하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로부터 10일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승인을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 13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밝히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일로 된다.

제 15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16 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 1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 정원수를 변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

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서 어느 한 상주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19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20 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21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 승인기관에 연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2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등록 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기업이 우리 나라와의 경제활동 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차책임보험에 들어야

리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문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 24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 건물, 채용한 인력의 관리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로동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채신기관들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아래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할 수 있다.

제 26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전에 심사승인 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날부터 7일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관의 납세확인 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 27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제출을 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 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 28 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 29 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국영역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 30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전문

('94.2.21 정무원 결정 제9호)

제 1 장 일반 규정

제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화국 령역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령역밖의 조선동포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 령역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령역안에서 리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 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변경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 5 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등록날자, 등록번호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4) 경영기간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 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 6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 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해서 써야 한다. 세무 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가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 결산서, 고정재산 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해 납부한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 환산율에 따라 한다.

제 9 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

제 10 조 세금은 재정기관이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 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령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11 조 귀국(임시 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에게는 공화국 령역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 2 장 기 업 소 득 세

제 13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별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리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채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1) 리자소득 2) 리익 배당소득 3)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방식을 하여 얻은 소득 6)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 이밖의 소득.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기업소득세의 납세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년도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 15 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리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공업부문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판매비, 보험료 2) 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류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로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연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로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리자, 보험료, 이밖의 유통비 3) 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류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 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16 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 설비의 가공, 제작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 17 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4%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25%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0% 4)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제 18 조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9 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해 확정납부한다. 분기결산리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한다.

~~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한다.~~

제 20 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분기 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 21 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년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연간기업 소득세 납부서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분기 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연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22 조 기업소득세 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결산리윤, 세률,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분기 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리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 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 재산감가상각금 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23 조 공제납부장은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률,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24 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해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해야 한다.

제 25 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

제 26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 납부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를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령역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 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 27 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리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율보다 낮은 리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 28 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이 포함된다.

제 2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운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 30 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리운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 31 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리운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 32 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의 결산 리운에서 메꿀수 있으며 다음년도에도 메꾸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 33 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리운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를 밝히고 해당기업 설립심사 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 34 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 35 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사승인 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 3 장 개인 소득세

제 36 조 공화국 영역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영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 37 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 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 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

인 기업소득(개인업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개인소득세를 바쳐야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 가격으로 한다.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로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리익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리자소득에는 예금, 채권에 의한 리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 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인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 38 조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이 2천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 세율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 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 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제2에 정한 세율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 39 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 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로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업을 해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40 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날 15일 안으로 공제납부 한다. 2) 수익인이 공화국 령역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령역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날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령역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3)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 수익인이 공화국 령역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령역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 하며 수익

인이 공화국 령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 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41 조 공화국 령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국 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날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 령역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 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42 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

제 4 장 재산세

제 43 조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배, 자가용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44 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임대했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된다.

제 45 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등록 신청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은 자가 공화국 영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톤수), 처음 값, 대보수비, 내용 년한, 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46 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 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제 47 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 가격으로 2월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한다.

제 48 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9 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 50 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 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제 51 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

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 5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했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입했거나 준공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 53 조 공화국 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령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 54 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 55 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힌다.

제 57 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리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 58 조 상속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 6 장 거래세

제 59 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에 대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공화국 령역안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2) 상업(무역 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리자와 예금리자와의 차액, 료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 60 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률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률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 61 조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재정기관에 거래세 납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62 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 63 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리자률(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률보다 낮은 리자률)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했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 64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 준다.

제 7 장 지방세

제 6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제 66 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로임 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액으로 한다.

제 67 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로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납부한다 2)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

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68 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 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제 69 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이 규정 부록 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

제 70 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멘트운반차, 지개차, 굴착기, 불도젤, 트랙또르 같은 것이 속한다.

제 71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리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리용에 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정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 72 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제 73 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 이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8 장 제재 및 신고청원

제 74 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 75 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 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정한 기일안에 세무(소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했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 폐기했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을 받는 것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 76 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 77 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7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웃기관에 신고청원을 할 수 있다. 신고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안으로 신고청원을 처리해야 한다.

제 79 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소재
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 집

-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초연설문 및 질문답변내용
 - 북한의 경제전략과 개방 전망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조연설문 및 질문 답변내용**

('94. 5. 12)

(기조연설문)

오늘 이렇게 신문편집인 협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한번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이지만, 관례에 따라서 새로 정부에 들어가면 각 신문사도 좀 다니면서 인사도 드려야 할 텐데 원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실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에 많은 분들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야말로 언론을 열고 공론을 집결해 가시는 신문편집인협회의 회원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들어오면은 일이 좀 잘 안되고 할 때에는 신문때문에 일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원체 출발부터 언론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불평의 여지는 전혀 없고 대단히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더 신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과거보다 훨씬 뉴스가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오는 연락보다도 신문 뉴스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신문의 해설기사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도 저희 스탭들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해설들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끌고루 잘 반영해 주시고 논설이나 여러 지면을 통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토론·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역시 간단한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통일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이미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제가 약속 드린대로 약 15분 가량 지금 저희가 어떻게 남북관계를 대처하는 통일정책을 펴 나가고 있나 특히 핵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문제는 너무 초점이 핵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핵문제가 중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핵문제도 어디까지나 남북관계 전반의 일부이지 핵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핵문제가 우리 모든 관심을 앗아간 까닭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고 모든 문제를 핵에 국한시키는 위험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전체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에 대해서 진단할 때 여러가지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동안은 우리가 북한과 외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핵문제를 다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과 외부와의

관계라고 하면 적어도 3가지의 차원이 있겠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를 반전시키고 그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핵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또 그런 구도안에서 핵문제가 논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북한 핵문제를 보는 관점은 북한과 외부와의 관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내부의 문제 즉 북한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크게 보아서 두가지로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몇 해 동안 일어난 역사적인 전환, 예컨대 제가 6년전 처음 통일원 장관으로 왔을때와 지금과를 비교하면 몇 해 안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체제가 해체되고 독일이란 분단국이 통일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로 예시되는 역사적인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에 북한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이 적응에의 선택을 둘러싼 북한의 진통이 핵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내부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번째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여러가지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은 믿을 수 없다, IAEA를 믿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남쪽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북한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 즉 북한 인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권이 독재성을 강화할 수록 특히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강화할 수록 그 강화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즉 독재를 할 수록 제일 무서운 것이 국민입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세계사의 흐름에 적응하는 정책개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두어가지 신화에 의존해서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화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침공을 기도하고 있다, 둘째 신화는 우리 민족의 전부가 즉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통일노선 특히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개의 신화를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화를 버리지 않고는 적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선택에 대해 결정적인 해답을 구하지 못하는 데서 핵문제는 비롯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마련되지 않는 한 깨끗하고 보기 좋은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른바 핵개발 문제 또 핵카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핵카드와 핵개발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기 보다는 이 두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이 어느정도의 국지전이나-협상의 국지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또는 부분적으로 북한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진전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협상 성공, 즉 북한의 뜻이 협상에서 관철^되다^았던가 하는 데서 북한이 만족할 형편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궁극적인 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사의 이 전환점에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핵카드의 사용은 대단히 묘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문제가 작금에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엇그제 우리 통일원 스텝이 간단한 것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적혀 있는 것도 구문이 됐습니다.

핵문제 진전의 현안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만드신 오늘아침 조간이 대체로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증언부언하는 것은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책의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지난 몇주일 동안 두가지로 확연해 졌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지금은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가 무엇이나 하면 하나는 모든 문제를 산

만하게 여러 갈래로 분산시킬 것이 아니고 핵 투명성 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초점을 투명성 보장에 맞추었다 하는 것이 첫번째 가이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에 의거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사교환이라는 전제조건을 우리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특사교환이란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기술적인 결정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얼마나 핵투명성 보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것으로서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주일 동안은 이슈를 가급적 줄여가고 IAEA에 의한 사찰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룩할 것인가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정전협정 문제 등을 들고 나와서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처음부터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3일 동안 북한 핵문제는 IAEA 사찰을 받는 문제, 이 경우에 내용은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사찰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사찰의 문제 그리고 연료봉 교체문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지난 이틀정도 막바지에 가서는 사실상 연료봉 교체 문제로 압축이 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IAEA의 요구를 전면 수락하기는 어렵다 하는 북한측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료봉은 당장 교체할 필요가 기술적으로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IAEA 입회하에 할 때까지는 연기를 하고 일단 추가사찰을 받은 후에

미국·북한 3단계 회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 북한측이 이것을 대체로 이행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일단 다음 주일에는 타협속에서 미국·북한 3단계 회담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블릭스 총장이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에게 보낸 서신 또 갈루치 미 차관보의 서신에서도 연료봉 교체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늦추더라도 그 늦추어 졌을 때의 연료봉 교체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이루어 질 때는 이미 지적했듯이 단순히 입회라든가 또는 연속성 보장의 차원이 아니라, 당초 IAEA가 강조했던 샘플의 선정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또는 특수 계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도 꼭 해야 되겠다는 점은 명백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어제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한군데로 몰아간다 하는 것이 하나의 가이드 라인입니다.

또 두번째 가이드 라인은 무엇이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가지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추구하는데서도 실제적인 즉 기술적인 차원에서 선후를 가릴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찰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 즉 IAEA 사찰이 하나 있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한 남북상호사찰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우리는 다 추진하는 입장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실현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선후의 문제에서 IAEA 사찰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하는 쪽으로 역시 이것도 선후를 분명히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미·북한 3단계 회담과 남북대화 재개의 선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미·북 회담이 먼저 열리기 시작해도 무관하다 하는 선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입니다만 과감한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협상국면의 전망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선 두가지, 협상국면과 제재국면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협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잘 되어서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 IEAEA나 우리나라 다 비교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첫번째 가능성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여러가지 다른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것이 가장 예상되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지지부진한 긴 협상이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깨끗이 전전을 보이기 보다는 하나하나 세부문제를 놓고 꽤 오랜동안의 협상이 이번 여름에 진행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두번째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내력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에 대한 테스트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자체가 자기들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제재국면 쪽으로 단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가지 가능성은 전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거기에 각각 적절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입장은 여기 준비물에도 간단히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는 수세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적인 변화 또 핵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 등을 감안한 체제유지를 위한 수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과거부터 연속되어 오던 공세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세적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를 단절시키고 미군 철수를 가져오고 이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통일을 이룩하는가 하는 것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세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야말로 공격이 바로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다소 불만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전체적인 입장을 본다면 우리가 보다 저력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체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쪽이 갖고 있는 책임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즉 통일로 가는 과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우리 쪽에 훨씬 더 많다 하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과 선후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낸다기 보다는 강점을 바

탕으로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는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날 북한에 대해서 국제공조체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의의 압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핵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핵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그에 입각해서 다른 문제들 즉 인도적 문제, 경제문제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으로나마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저희는 불과 2년전에 우리가 발효시킨 기본합의서 체제를 하루 빨리 가동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진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그때는 경제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미리 한 말씀드릴 것은 미묘한 남북관계 특히 협상 국면에서는 일정한 방정식을 미리 발표해서 1, 2, 3의 요건이 구비되면 4라는 결론으로 간다는 도식적인 정책 선택에 대한 commitment를 미리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진전과정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시는 것 또 질문하시는 것과 연관시켜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장행훈(동아일보)

아까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외부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 보다도 북한 내부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 내부의 문제가 언제부터 이 핵문제로 발전하도록 그런 원인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사정 보다도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외부사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과 지난 5,6년 동안 소련해체, 그리고 냉전종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련·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고 특히 동구라파 체제들의 붕괴—이런 모든 것이 북한에 대단히 큰 위기의식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자체는 아시다시피 물론 그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국제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적인 환경에 적응해서

NPT체제를 비롯한 국제체제에 적응함으로써 순리로 체제개혁을 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속에서는 오히려 어떤 독자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수호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레닌주의체제, 즉 중국과 베트남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도 적응류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그런 선택을 못하는가라고 본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큰 사고없이 잘 따라올 것인가 라는데 대한 자신, 또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신화를 바탕으로 체제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선택을 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거듭 우리는 이런 딜레마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데 대한 『선의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영무(경희대)

지금 남북한의 핵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관계에 있어서 작년 1년동안에 정부 각 부처가 북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갈팡질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역시 북한 김일성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즉 속성, 대남전략전술 목표, 대화형태라든가, 대남적화혁명전략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부처가 의견통일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먼저 통일이 돼야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다음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미국을 남북대화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준비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IAEA 추가사찰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핵문제하고 남북경협을 연계시켜 왔는데 혹시 분리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은 부처간에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의 차이는 사실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보다는 분단구조에서 오는 각 부처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첨예한 대결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60만 대군이 대치하는 특수지역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에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적인 현실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방부는 이 대결의 구도에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느냐 하는데 시각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상 적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또 다른 부처는 어떻게 대화를 잘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가 맡은 임무와도 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이들은 있는데, 사실 이 차이는 저는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모아서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조화시켜서 일관성있게 끌고가는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견해들이나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하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총괄적인 조화점을 찾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이 나서는 것—이것은 전혀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 남북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 협조관계는 미국과의 공조체제입니다. 이것은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공헌을 해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국의 중요성은 물론 절대 작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제재의 문제자체를 논의할 때마다 과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을, 특히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미국을 배제하고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상회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적절한 여러가지 차원에서의 회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원칙으로는 회담의 차원을 놓고 우리가 크게 시비를 벌이지는 않겠다. 다시말해 가능한 한 어

떤 차원에서든지, 어떤 수준에서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정상회담도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중국 알선 운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경험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되기까지는 경험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두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핵문제는 문자그대로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몇일전에 내년 원폭 5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히로시마에 초청을 받아서 가있었습니다만, 아주 초보적인 무기이지만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남북대결의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문제가 적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기전에 경험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아시다시피 만에 일이라도 북한이 부정적인 차원으로 현재 여러가지 교섭을 끌고 갔을 때 우리는 부득이 경제제재라는 국제공조체제에 의존한 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경험을 하겠다고 나서면 길게 말할 필요없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월간한국논단)

늘 느끼는 일입니다만 이 부총리는 학자출신 장관답게 의문이 많았던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두가지 의문은 아직도 안풀리고 있는데, 하나는 평화협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하고 휴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달성시키려는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가 핵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핵은 평화협정, 즉 미국에서 1:1로 상대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미국에서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언제든지 핵문제는 북한이 포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것을 맺어놓으면 주한미군의 존재의의가 없어지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 국민의 심리가 흔들리고, 제2의 월남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정전협정 문제를 끌고 나왔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엇그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는 '92년에 채택된 남북합의서를 바

탕으로 이것을 가지고 남북대화의 기본으로 삼겠다. 그리고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고장(孤掌)이 불명(不鳴)이라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하고자 해도 저쪽에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평화협정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거기 당사자로 포함이 되든 안되든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상당히 중대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실 수 있는 것인지,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또하나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지난 4월초에 북한을 자극시킬까봐 난민을 못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향이 180도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가 연상을 해봅니다.

1989년에 통독직전에 한꺼번에 20만명 이상이 서독으로 물러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장벽이 의미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앞당겨졌다고 보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이 6.25때 매일매일 반공포로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국제법이고 뭐고 반공포로를 한꺼번에 비밀리에 석방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하나의 통솔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다, 재정문제다, -구체적인 문제가 안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 난민을, 정치적인 억압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탈출하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지를 선언같은 것으로 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중국이나 관련국과의 교섭문제는 외교적으로 우

리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되 적어도 정부가 그러한 선언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평화협정 문제는 원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며칠 사이에 이 문제가 북한측의 군사정전위에서의 철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뉴스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선생이 지적하신 장기적인 목표와 거기에 따른 전략에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전술적으로는 저희가 핵에 초점을 맞춘 것을 다소 흐리게 하고, 둘째는 이것에 연계되는 IAEA·미국과의 기술적인 협의, 그리고 나아가서 3단계 미·북한 회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적인 측면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는 전술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공세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미군철수를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을 축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보도도 조금 나갔습니다만, 대단히 다각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각 부처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제가 설득력있게 설명을 드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

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벌목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난민문제가 나왔는데, 이 원칙의 문제는 우리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또 아까 우선순위를 중요시 한다 그랬는데,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중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본다면 사실 인도적인 문제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난민 또는 탈출한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분들을 어떻게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자극한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바로 이 분들이 나와서 있는 제3국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신 국민들이 이심전심으로 다 합의하고 계신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저희가 제3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최대다수의 난민을 구제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생님이 어떤 선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너무 선언이 남발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국제사회 흐름자체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곤(조선일보)

조금전에 부총리께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가장 절실한 이산가족상봉 문제도 있고, 경험하고 별도라고 할 수 있는 학술교류, 문화교류, 기자교류, 관광교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재래식무기 같은 것을 감축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경험과 마찬가지로 핵문제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핵문제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핵무기가 이미 한 두개쯤 개발됐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미국이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다고 전제를 하고 대북접근을 시도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핵문제의 선결을 주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제가 아까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핵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핵문제의 해결로 향한 단계적인 진전이다—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3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자면 인도문제가 사실 경험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동진호 선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경험에 앞서는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인 문제건 경험의 문제건 또 전체적인 군사면에서의 긴장완화의 문제건, 이런 문제들도 단계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문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단계적으로 진전되는데 따라서 인도적인 문제나 경험문제도 또 단계적으로 진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도 절대 한번에 푼다든가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진전이 있나—이것을 좀 정확히 그려달라고 와서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방정식을 만들어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천명하고 사실은 그 상황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있게 판단해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더욱 더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의견의 상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내에서도 한두개쯤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런식으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입장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개가 아니라 반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0만 대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전혀 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일방이 도입한다면 현재의 균형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평화구조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개도 민족의 생존에는 지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공존하는데 대해 서로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앞서는 문제다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이 한두개의 핵무기를 수용해도 어떠냐 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우리와 입장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다행히 한미간의 입장은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IAEA 사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가 반개라도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미국이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공동선언을 무효화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준호(조선일보)

부총리께서는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남북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일방의 주장인지 미국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협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갈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정책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특사교환을 철회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특사교환의 철회라는 것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특사교환 의제만 하더라도 제일 강조되는 것이 무어나 하면 특사교환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놓은 것이 핵문제인데 그것(특사교환 철회)이 어떻게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특사교환의 대가를 말씀하시는데, 초점을 핵투명성 보장에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IAEA에 의한 압력이 보다 가중돼서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도부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모두의 입장이 반드시 같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결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관계를 지난 1년동안 돌이켜 본다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전에 생각했던 것 입니다만, 우연히 작년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새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쪽도 국내외적으로 전환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핵문제, 평화통일 문제를 비롯해서 그렇게 모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설득력 있는 입장을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주는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냥 미국이 잘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다 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잘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작년에 어디서 잠깐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워싱턴에서 제가 놀란 것은 1992년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아연실색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문제도 우리가 지금 면밀하게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와 공동의 보조를 구축해 가는 이러한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문제가 지루하지만 다소 해결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해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길어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력있는 입장을 만들

들어서 미국도 설득해가면서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불투명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 가능성도 제가 만에 일이라도 북한이 반개의 핵이라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미국 자체가 지금 남북한간의 대화, 특히 평화체제구축에 있어서 남북간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장수근(서울신문)

두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이홍구 부총리께서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직접 성안하신 일이 있으셔서 적절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졌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그 명칭부터 내용까지를 대개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민족 한나라 두체제 두정부, 그에 비해서 우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든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다시 내건 통일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는 국민이 모르는 국민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와같은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통일논의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차제에 재고를 요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정전협정이 지금 거의 부재된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휴전선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그나마 정전협정이라는 메카니즘이 컨트롤 해줬는데, 현재 폴란드라든가 체코의 감사요원도 철수하고 겨우 전화만 연결된 상태에서 혹시 휴전선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컨트롤 메카니즘이 없는데 이와같은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과연 정부로서는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지 이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우선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공동체 통일방안은 제가 입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88년 '89년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통일논의 속에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각자 의견들을 다 제출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일특위가 구성돼서 공청회를 하고 다른 데서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종합하는 역할을 제가 한 것이지 저의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 정부의 의견도 아니고 여의 의견도 아니고 야의 의견도 아닌 합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남북간의 대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성의 대결입니다. 통일방안이 그만큼 상징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려연방제라면 우리는 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작

년 7월 평통 6차회의에서 통일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 안에서 3단계 3기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3단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방안을 몇단계로 하느냐 하는 것에 신경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4단계로 했다고 되고 3단계로 하면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3단계 통일방안은 이미 있는 방안을 풀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장관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우리의 방안은 공동체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남북합의서가 발표되고 함으로써 보다 확연하게 교류협력의 시대가 있고,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연합체제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연합체제를 거쳐서는 단일 통일국가로 간다—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풀어쓴다면 이것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줄여서 얘기한다면 『연방제』와 『공동체』간에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전협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셨는데, 바로 지금 제기하신 두가지 이유때문에 저희가 거듭 북한의 태도나 근래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명확히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핵문제에 이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또는 남북간의 합의를 가볍게 깨버린다—이것이 지적이 더 돼야 됩니다. 즉 정전협정에는 명확히 양쪽의 합의없이는 변경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깬다는 것은 국제적인 협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 지적됐듯이, 남북합의서 5조에 분명히 정전협정은 양쪽이 지켜가면서 어떤 개선책을 찾는다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있어서 이점도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북한이 지금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고조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되다 보니까 북한측에서도 폴란드 중립감시단에 대한 철수 요청 보도는 그것이 전달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저쪽에서도 이번 행동이 적어도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 북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듭 국제사회, 한·미간, 남북간 모든 차원에서 저희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16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고에 의한 충돌의 확대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다 책임있는 입장을 취할 것을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민병용(한국일보)

부총리께서 대안중에서 지지부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앞으로 향후 재임기간 중에 단계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것 언어

낼 것이 어느정도, '98년까지는 소위 남북연합의 2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정책추진에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년간은 너무 핵문제 때문에 소모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정부의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코멘트보다 대단히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민족통일연구원에 갔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더 세부적인 계획도 만들어서 능률적으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도준호(조선일보)

제가 두번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상호사찰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우리가 지금 비핵화선언하고 상호사찰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이야기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상호사찰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또 우리가 볼 때는 상호사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다른 식의 정보가 없는 한에서는, 우리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상호사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오히려 미국이나 IAEA쪽으로 넘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통일방안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도 여러번 말씀을 했지만 통일방안 자체는 제가 보기로는 기본적으로 흡수통일방안이 아니냐, 물론 단계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하는 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우리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정책 최고 당국자가 나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의 통일방안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옛날 독일에서 이야기 하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4대원칙만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겠다, ^Q시장경제를 하겠다든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든지 이런 원칙의 천명에 그쳐야 되지 괜히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혼란이 오는 것이 우리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니까 방식은 때로는 흡수통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좀 색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부총리가 이인모 문제를 해결해야 됐을 때 어떤식으로 했겠는가, 그러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겠느냐, 그리고 역시 그렇게 보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상호사찰 문제는 일단 상호사찰 문제에 합의가 되더라도 핵문제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많은 기술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없다 하는 점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천명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민족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는 것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상호사찰을 목적으로 한 여러가지 활동, 이것은 국제기구에서의 사찰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이라크 상황에서 벌어진 것입니다만, 국제사회로서는 IAEA에 의한 사찰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발견한 바 있기 때문에 저쪽은 저쪽대로 만일 상호사찰이 있다면 보완적으로 사찰을 훨씬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택하기 보다는 명분상에서도 그렇고 실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둘다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흡수통일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대화를 중심으로 한다, 공존의 입장을 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느냐, 최종단계를 생각할 때는 서로가, 적어도 우리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떻다는 목표를 분명히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우리의 가치, 그것을 주저없이 우리는 명백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흡수통일 문제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비생산적인 논의입니다. 사실은 흡수통일 하겠다고 정책을

내걸고 나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흡수통일 안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정법에 입각한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통일방안에 의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진전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모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들어온 신임 장관으로서 코멘트 하기가 거북하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北韓의 경제전략과 개방 전망

北韓은 1993년 12월 8일 노동당중앙위 제6기21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적 정세변화와 나라에 조성된 침예한 정세」를 이유로 들며 제3차7개년계획의 중요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것을 공식 시인하고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로 설정 이 기간중에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로 나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北韓 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전략은 종래의 중공업 중심 자급자족 경제전략에서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종래의 농업 및 경공업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대외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北韓이 이와같이 경제전략을 수정하게 된 배경은 제3차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할 정도로 경제침체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식량·경공업·대외무역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식량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2년도北韓의 연간 곡물 총수요량은 약 6백50만톤으로 추정되나 1991년 생산량(4백42만7천톤)과 1992년도 곡물수입량(83만톤)을 합한 곡물 총공급량은 5백25만7천톤에 불과하여 1992년도 식량절대부족량은 1백24만3천톤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2년도北韓의 곡물생산량은 4백26만8천톤인데 비하여 1993년北韓의 연간 곡물 수요 추정량은 약 6백58만톤이어서 1993년에도 식량난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동북아지역에 불어 닥친 이상 저온현상으로

1993년 곡물생산은 3백88만4천톤(쌀 1백31만7천톤, 옥수수 1백96만3천톤, 콩 19만7천톤, 고구마 31만2천톤, 기타 잡곡 9만5천톤)에 그쳐 1992년도 생산량보다도 38만4천톤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北韓의 곡물수요 추정량 6백67만톤에 비해 2백79만톤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며 외화부족이 심각한 北韓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극심한 식량난이 예측된다.

북한의 곡물생산 및 수요량

(단위 : 만톤)

	1991	1992	1993	1994
생산량	442.7	426.8	388.4	
수요량		650.0	658.0	667.0
부족분		207.3	231.2	278.6

※부족분=당해년도 수요량-전년도 생산량

따라서 北韓은 우선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업 제일주의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갖되 경작권은 농민개개인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현재의 중국식 농업제도를 모방한 새로운 농업제도를 도입, 대대적인 농업제도 개혁을 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새로운 경제전략 제시

北韓에서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는 맥락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민생활향상 차원에서 인민의 생필품 생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화벌이 차원에서 수출산

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경공업분야에 걸쳐 있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北韓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체소비를 위한 피복공장과는 별도로 의화별이용 전문수출피복공장을 세웠다. 현재 그같은 공장은 4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합영합작회사는 20여개로 朝總聯과의 합영이 대부분이다. 이들 수출피복공장은 원·부자재를 수입 가공, 제품을 日本 등 서방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모란봉 합영회사, 낙원 성화피복합영회사, 진달래 합영회사 등을 들 수 있다.

北韓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수출확대가 경제계획 성패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출제일주의의 해」(1980, 1983, 1985, 1988)를 설정하는 등 수출증대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수출증대에 대한 관심은 제3차7개년계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北韓은 계획기간중 규모를 계획전에 비해 3.2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 무역액 88년을 정점으로 하락

그러나 계획기간중 1988년의 무역액이 52억4천만달러로서 기준년도(1986년)의 1.5배로 증가한 것을 정점으로 이후 무역액은 계속 줄어들어 1992년에는 1986년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24억7천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역점을 두었던 대외 무역분야가 가장 저조한 상태이다. 따라서 北韓은 심각한 외화부족으로 인하여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원의 수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것이 1994년

신년사에서 무역제일주의를 다시 강조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北韓의 대외무역

(단위 : 억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출	16.7	20.3	19.5	20.2	9.5	9.2
수 입	24.0	32.1	28.5	26.2	16.4	15.5
무역총액	40.7	52.4	48.0	46.4	25.9	24.7

이와같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과 관련 北韓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수출품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 생산을 증대하며 대외시장을 전적으로 개선하여 대외무역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경제전략이란 농업 및 경공업부문보다는 대외무역 부문에 보다 역점을 둠으로써 그동안의 폐쇄경제체제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여 경제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외자본·기술유치 위해 19개 법규 제정 및 정비

北韓은 이와같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 법령의 개정과 정비이다. 北韓은 외자유치에 필요한 법규들을 제정 또는 정비하는 가운데 최근 기존 합영법을 수정 보완한 새 합영법을 내놓았다. 1984년 9월 5장 26조의 합영법을 채택하고 이듬해 3월 10장 71조의 합영법 시

행세칙을 처음 마련, 시행해 온 北韓은 1992년 10월 이후 연이어 발표해 온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투자유치 관련 법규들에 맞춰 합영법도 5장 47조의 신법으로 손질한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현황

이름	제정일	주요내용
합영법	84. 9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관련 기본규정
합영회사소득세법	85. 3	합작투자법인 소득세 관련규정
외국인소득세법	85. 3	북한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세 관련 규정
합영법 시행세칙	85. 3	합영법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
합영회사소득세법 시행세칙	85. 3	합작투자법인세 세부 시행규정
외국인소득세법 시행세칙	85. 3	외국인소득세에 관한 세부 시행규정
외국인투자법	92.10	외국투자유치관련 기본법(22조)
외국인기업법	92.10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청산, 분쟁해결에 관한 기본규정(31조)
합작법	92.10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에 관한 일반규정(21조)
합영법시행세칙(개정)	92.10	합영법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93. 1	기본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기본세제규정(57조 및 부록)

이름	제정일	주요내용
외환관리법	93. 1	외국환 관리기본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93. 1	외국자본과 기술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관련 기본규정(43조)
지하자원법	93. 4	지하자원의 탐사와 개발이용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증진토록 규정
토지임대법	93.10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토지이용권의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 허용(6장 42조)
외국인투자은행법	93.11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은행 설립과 지점 설립을 허용(5장 32조)
출입국관리규정	93.12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 규정(21조)
합영법(개정)	94. 1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관련 기본규정

◆ 중국식 경제특구 통한 개혁·개방화 예상

北韓은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및 합작법을 제정하고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데 이어 1993년 1월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환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환

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어 북한은 외국인 기업과 개인에 대한 北韓 토지의 임차권 및 이용을 허용하는 토지임대법(1993.10),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은행 설립과 지점개설 및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은행법(1993.11),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1993.12) 등을 채택한 데 이어 1994년 1월 합영법을 개정함으로써 외자도입 관련 법규정비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美國과의 핵타결에 대비, 대외개방을 준비하는 장기포석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 구상을 구체화한 투자유치계획 수립 및 홍보이다. 北韓은 1992년 5월 평양에서 열린 「동북아경제포럼」 등의 세미나 이외에 각종 설명회, 해외상품전시회 참가 및 경제·무역사절단의 파견 등을 통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계획을 홍보해 왔다.

특히 199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제2차 산업자원분야 워크숍에 참석한 北韓 대표단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1백24km²로 확장하였고 이 지역에 항만·철도·도로·공업 등 10개 부문에 걸쳐 93개의 구체적인 사업을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것이며, 9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이들 공단에 합영·합작 및 단독투자의 형태로 섬유·피혁·완구 등 경공업을 비롯해 냉장고·텔레비전·반도체 등 전자제품, 자동차부품공장, 원목공장 등 68개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외자유치 홍보에 나섰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北韓인사들의 中國경제특구에 대한 실태파악 노력이다. 北韓은 지난해 12월 이후 경공업

부, 대외경제위원회, 능라무역총국, 은하무역총국 소속의 고위 관리들을 심천과 주해 등 中國 광둥성내 경제특구 일원에 대거 파견, 中國의 개혁·개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北韓 노동당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黃長燁이 1994년 1월 15~22일 中國을 방문하여 中國의 개혁·개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北韓은 中國의 심천이 다른 지역과 차단된 형태로 독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천모델」이 北韓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봉·나진지역과 청진 등 제한된 지역에 한하여 개방실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같은 실험이 성공할 경우 北韓은 중국식 모델에 가까운 개방쪽으로 조심스럽게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내외통신 제 886 호)

북한일지

북한일지

- '94. 2. 5 ○ 『농근맹』, 농산물시장개방 반대시위 관련 비난 「성명」 발표.
- 2. 6 ○ 「조선학생위원회」, 한국의 쌀시장개방 반대시위 관련 「성명」 발표.
- 2. 7 ○ 조선학생위원회, 농민탄압 규탄성명 발표
- 2. 8 ○ 金正日 생일행사 일환으로 「중앙사진전람회」 진행
- 2. 9 ○ 국가과학원장에 김길연, 국가과학기술 위원장에 蔡熙正을 각각 임명.
○ 외교부대변인, 美연례인권보고서 비난 「담화」 발표.
- 2. 10 ○ 孫成弼(駐러시아 대사), 日本의 核무장화 추진 계획 비난 기자회견 진행.
- 2. 11 ○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동학혁명 1백주년 남북 공동행사 추진 실무접촉 무산 관련 「성명」 발표
- 2. 12 ○ 외교부대변인, 美의 對北(核) 제재논의 관련 중앙통신과 기자회견 진행.
- 2. 13 ○ 黨대표단(단장 비서 黃長燁)-캐나다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대표단(단장 전국지도자 하디올 바인스)간 「회담」 진행.
- 2. 14 ○ 黨중앙위, 김정일 생일축하 「연회」 진행(평양).

- '94. 2. 15 ○ 黨중앙위, 金正日 52회생일 축하 「연회」 개최 (평양).
 - IAEA와 7개 核시설에 대한 사찰 합의(오스트리아 빈).
- 2. 16 ○ 金正日 생일 축하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평양).
 - 제3회 백두산상 국제피겨스케이팅대회 진행(2. 12~16 평양)
- 2. 17 ○ 사회민주당대표단(단장 위원장 김병식), 중남미 국가 순방차 평양 출발
- 2. 18 ○ 외교부, 한국의 중수로 폐기 등을 주장한 「비망록」 발표.
- 2. 19 ○ 金正日의 「온사회 주체사상화 강령」 발표 20주년 기념집회 개최(평양).
- 2. 21 ○ 외교부대변인, 핵사찰 관련 중앙통신과 「기자회견」 진행.
- 2. 22 ○ 농촌테제 30주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개최(평양 인민문화궁전).
- 2. 23 ○ 농촌테제 발표 30주기념 미술전시회 개최(평양 민예전시관).
- 2. 24 ○ 北赤, 사할린동포 영구귀환문제 관련 對韓비난 성명 발표.
- 2. 25 ○ 北(유엔주재부대사 허종)-美(허버트 국무차관보)간 실무접촉 진행(뉴욕).
- 2. 26 ○ 中國 黨대외연락부대표단(단장 부장 李淑錚), 평양방문 (2.22~26) 마치고 귀국

- '94. 2. 27 ○ 평양시 만경대구역 주탁아소를 『강반석 탁아소』로 명명
2. 28 ○ 『전국농업대회』 (2.25~2.28) 폐막
○ 3.1절 75돌 평양시 기념보고회 개최(중앙노동자회관)
3. 1 ○ 金日成, 『농촌테제』 30돌 경축연회 배설(금수산 의사당)
○ IAEA사찰단, 평양도착
3. 2 ○ 金日成, 농촌테제 발표 30주행사 「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 공연 관람(평양).
3. 3 ○ 南北특사교환 위한 제4차실무접촉 진행(판문점).
3. 4 ○ 姜錫柱(외교부 제1부 부장), 北-美간 뉴욕합의문 이행 촉구 「담화」 발표.
3. 5 ○ 黨대표단(단장 비서 黃長燁), 베트남·라오스 등 東南亞방문차 평양출발
3. 6 ○ 駐北 쿠바신임대사 호세라몬 로드리게스 바로나 평양도착
3. 7 ○ 외교부대변인, 北韓핵문제관련 日本시각 비난 기자회견 진행
3. 8 ○ 제9차 강원도 과학기술축전 개최(3. 7~8).
3. 9 ○ 러시아주재 대사 孫成弼, 北-美간 뉴욕합의서(2.25) 이행촉구 담화지지 「기자회견」 진행(모스크바).
○ 남북특사교환 위한 제5차실무접촉 진행(판문점).
3. 10 ○ 「전국 黨사상부문일꾼회의」 개최(인민문화궁전).

- '94. 3. 11 ○ 軍대외사업일꾼대표단(단장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장 少將 김학산), 中國방문 종료(2. 28~3. 11)
- 3. 12 ○ 남북특사교환 위한 제6차실무접촉 진행(판문점).
- 3. 13 ○ 「직총」 중앙위, 노동자 임금투쟁선동 호소문 발표
- 3. 14 ○ 교육위원장 최기룡, 金日成특사자격으로 이집트·시리아순방차 평양출발.
- 3. 15 ○ 「社勞靑」 중앙위 제4차전원회의 개최(3. 14~15, 평양).
- 3. 16 ○ 남북특사교환 제7차실무접촉 진행(판문점).
- 3. 17 ○ 黨대표단(단장 비서 黃長燁), 베트남(3. 7~10)·라오스(3. 10~17) 방문 종료.
- 3. 18 ○ 원자력총국대변인, IAEA의 대북핵사찰 불만 비난 「담화」 발표.
- 3. 19 ○ 남북특사교환 제8차실무접촉 진행(판문점).
- 3. 20 ○ 김일성 특사 최기룡(정무원 교육위원장), 이집트 카이로 도착
- 3. 21 ○ 외교부대변인, IAEA재탈퇴 위협「성명」 발표
○ 남북특사교환 북측실무대표단, 특사교환 실무접촉 무산 관련 「성명」 발표
- 3. 22 ○ 「직총」 중앙위, 남조선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백서 발표.
- 3. 23 ○ 김일성, 파키스탄 국경절 즈음 「레가리」대통령에게 축전
- 3. 24 ○ 「직총」 중앙위, 남측 노동자에게 정권타도 투쟁

- '94. 3. 25 ○ 「사로청」 중앙위, 남측 안보관계 장관회의 규탄 성명 발표
3. 26 ○ 김일성 특사 최기룡(정무원 교육위원장), 시리아 다마스쿠스 도착(3. 24) 보도
3. 27 ○ 외교부 대표단(단장 : 김창규 부부장)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도착(3. 25) 보도
3. 28 ○ 외교부 대변인, 패트리엇미사일 배치 등 비난 성명 발표.
3. 29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 환영「담화」 발표.
○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배치 규탄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평양).
3. 30 ○ 金正日의 출판인쇄사업의 혁명적 전환 제창 10주 「기념보고회」 진행(평양).
3. 31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주기념 「정치인·학자·언론인들의 연구 토론회」 진행(평양).
4. 1 ○ 동학혁명 1백주 공동행사개최 무산관련 「조선종교인협회 확대회의」 개최(평양).
4. 2 ○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개최(3. 31~4. 2 평양).
4. 3 ○ 金日成특사 崔基龍, 이집트·시리아 방문 종료(3. 14~4. 3).
4. 4 ○ 외교부대변인, 유엔안보리의장 성명채택(3. 31) 비난「성명」 발표.
4. 5 ○ 당대표단(단장 외교부 부부장 박경선), 그리스 사회주의운동 제3차대회 참가차 평양출발.
○ 청우당천도교·「조선천도교회」 합동전원회의 진행(평양).

- '94. 4. 7 ○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확대전원회의 진행 (평양).
 - 金日成특사 김창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방문후 귀환(3. 15~4. 7).
- 4. 8 ○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 개최(4. 6~8, 평양).
 - 캄보디아 국왕 시누아크, 訪北종료(4. 4~8)
- 4. 9 ○ 경제대표단(단장 부총리 洪成南), 파키스탄 방문종료(3. 22~4. 9).
 - 林業部대변인, 시베리아 북한벌목공 인권관련 「담화」 발표.
- 4. 10 ○ 祖平統서기국, 월성·대덕 원자로 핵개발용 주장 「보도」 발표.
- 4. 11 ○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 「전민족대단결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민족대회」 소집(8. 15) 제의.
 - 외교부, 백서 발표.
- 4. 12 ○ 개천-순천간 전철 「개통식」 진행(평북 개천역).
- 4. 13 ○ 黨대표단(단장 비서 黃長燁)-카자흐스탄 사회당대표단(단장 공동위원장 두보이크)간 「회담」 진행(평양).
 - 黨대표단(단장 비서 黃長燁)-아일랜드 노동당 대표단(단장 총비서패트 쿠웨네이)간 「회담」 진행(평양).
- '94. 4. 14 ○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주최 「좌담회」 진행 :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윌리엄 테일러·CNN-TV 부사장 에스 조르단 등 참석.

- 4. 15 ○ 민방위부장 김익현, 次首에 임명.
○ 신의주시(조선경공업수출회사 사장 최병헌)－中國 연변자치주(州黨위원회 부서기 황상)간 「신연합작회사」 조업식 진행(신의주).
- 4. 16 ○ 김일성, 전직 국가 및 정부수반 일행(「카라소」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접견 및 오찬
- 4. 17 ○ 리비아 대통령특사 무스타파 하루비(軍총검열관), 평양도착.
- 4. 18 ○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4. 9~18).
- 4. 19 ○ 「4.19 인민봉기」 34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진행 (중앙노동자 회관)
- 4. 20 ○ 핵문제 관련 「외교부 비망록」 발표
- 4. 21 ○ 김일성, 재미교포 문명자 접견(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배석)
- 4. 22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에 「노력영웅」 칭호 및 「공훈 탄부」 칭호 수여
- 4. 23 ○ 전국 석탄공업일군대회 폐막(4. 20~22) 보도
○ 베트남공산당 대표단(단장 : 당비서 홍하) 평양도착
- 4. 24 ○ 조선인민군 창건 6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2.8 문화회관)
－ 오진우·박성철·김영남·최광·김광진(경축보고) 등 참석
- '94. 4. 25 ○ 김일성·김정일, 인민군 제564부대 방문
－ 오진우·최광·이을설·김봉률·김광진 등 영접

- 4. 26 ○ 김일성, 베트남공산당 대표단(단장 : 당비서 홍하) 접견
 - 중국공산당 당일군대표단(단장 : 백극명), 평양도착
 - 제22차 제네바 국제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입상 사실(4.21) 보도
 -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수상
- 4. 27 ○ 금성간석지공사 준공식 거행
 - 평남 온천군 앞바다 3,300정보 개간
 - 최광(인민군 총참모장), 서운석(평남도당 책임비서), 서관희(당중앙위 비서), 김운혁(정무원 부총리) 등 참석
- 4. 28 ○ 외교부 성명 발표
 - 미국에 한반도 평화보장체계 수립 위한 협상 제의
 - 김일성, 조총련 중앙상임위 의장 한덕수 접견
- 4. 29 ○ 김일성의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 중앙연구토론회 진행(인민경제대학)
 - 남한의 핵폐기물 투기행위 규탄 남포시 군중집회 진행(남포예술극장)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동정

통일교육전문위원동성

- '94통일원교육전문위원 연찬종료
 1. 일 시 : '94.3.7~4.27(2박 3일, 8차)
 2. 장 소 : 통일연수원
 3. 참가인원 : 610명

- 통일교육전문위원 시범강의 종료
 1. 일 시 : '94.3.7~4.27(연찬교육시 병행)
 2. 장 소 : 통일연수원
 3. 참가인원 : 28명

- 통일교육전문위원 「제10회 통일대화의 광장」행사 종료
 1. 일 시 : '94.5.25~5.26(1박 2일)
 2. 장 소 : 대구힐사이드호텔
 3. 참가인원 : 92명
 4. 분과별 토의주제
 - 제1분과 : 통일정책에 대한 진단과 제안을 위한 연구
 - 제2분과 : 북한의 핵개발과 우리의 대응자세
 - 제3분과 :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교육의 방향

- 시사자료 -

통일교육('94-2)

1994년 5월 일 인쇄

1994년 5월 일 발행

통 일 연 수 원

(전화 901-7171~4)

인 쇄 강 문 인 쇄 사

(전화 294-6651~3)
